VOICEYE
voiceye.com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

2017. 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IDRIK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이동석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공동연구원: 이복실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김용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장영재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남세현 (한신대학교 교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팀장)

백은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위기거주홈 팀장)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Ⅱ. 국내의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운영방안

1. 학대피해아동 쉼터 ····· 9
2. 학대피해노인 쉼터 ····· 14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2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7
5.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 29
6. 청소년 쉼터 ····· 30

Ⅲ. 외국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운영방안

1. 미국 장애인 주거정책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 37
2. 독일의 학대피해거주시설 ····· 53
3. 영국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 67
4. 호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 77
5. 비교분석 및 함의 ····· 86

Ⅳ. 초점집단면접 결과

1. 학대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자 집단면접 분석결과 ·····91
2. 이용자 집단면접 분석결과 ·····95
3. 분석에 따른 함의 ·····99

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103
2.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103
3.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류 ·····104
4.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104
5. 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설치기준 ·····105
6. 쉼터설치 필요 정도 ·····106
7. 이용절차 ·····106
8. 예산지원 ·····107
9. 종사자 의무교육 시행 ·····109
10. 시행규칙 및 사업지침의 개정안 ·····109

참고문헌 ····· 115

표 목차

〈표 1〉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2016년 7월 31일 기준) ·····12
〈표 2〉 2015년도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보호노인 현황 ·····17
〈표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3
〈표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24
〈표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별 종사자 수 ·····26
〈표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 ·····29
〈표 7〉 청소년 쉼터의 유형 ·····30
〈표 8〉 미국 장애인주거복지 프로그램 ·····41
〈표 9〉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지원내용 ·····60
〈표 10〉 동반자녀를 위한 지원내용 ·····62
〈표 11〉 학대피해여성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 ·····63
〈표 12〉 bff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 ·····64
〈표 13〉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여성을 위한 검색구성 ·····65
〈표 14〉 홈리스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82
〈표 15〉 미국, 독일, 영국, 호주의 학대피해자 지원정책 종합 ·····87
〈표 16〉 학대피해자 지원기관 실무 연구참여자의 특성 ·····91
〈표 17〉 쉼터 이용 연구참여자의 특성 ·····96
〈표 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09
〈표 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사항 ·····110
〈표 2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사항 ·····111
〈표 2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개정사항 ·····112

그림 목차

[그림 1] 노인쉼터 입·퇴소 서비스 절차 ····· 20

VOICEYE
voiceye.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VOICEYE
voiceye.com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운영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10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장애인인권상담전화(1577-5364)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2,411건으로 그 중 장애인 학대 상담은 6,872건(약 31%)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학대 상담은 2014년 1,433건(20.9%), 2015년 2,382건(34.7%), 2016년도 상반기 2,109건(30.7%)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동석 외, 2016).

학대유형별로 연도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비율이 전체 학대 상담 중 41.6%로 월등이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 학대 20.8%, 경제적 학대 18.5%, 유기 및 방임 7.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담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면, 학대 상담 중 현장 분리 등 적극지원 비율이 33.7%로 나타나고 있다(이동석 외, 2016). 따라서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장 분리를 위해서는 거주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쉼터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쉼터는 아직 시범사업형태로 전국에서 6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장애인학대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은 학대피해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받을 곳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다보니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보호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를 당한 많은 장애인은 회복지원과 자기옹호 방안 등이 수립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회복지원과 이후의 통합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 운영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의 역할에 대한 정책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학대피해장애인의 안정된 삶의 지원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쉼터운영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철학적·현실적 필요성을 탐색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기능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매뉴얼) 개발을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회복지원과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연구내용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철학적,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탐구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주요 기능

-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회복지원과 이후의 통합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방안
- 다양한 방식 중 주요 기능에 대한 선택
  - 주택(house)으로서의 기능 / 주택(house)으로서의 기능 + 거주서비스(housing service) / 주택(house)으로서의 기능 + 거주서비스(housing service) + 상담심리서비스 / 주택(house)으로서의 기능 + 거주서비스(housing service) + 자립지원서비스 / 주택(house)으로서의 기능 + 거주서비스(housing service) + 보호서비스(care service)

    * 거주서비스(housing service):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집 관리, 유지 등에 필요한 서비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등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역할 관계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제도화 방안 연구

-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방법
- 필요 정도 간략 추산
- 설치 기준
  - 규모 / 시설 및 설비 기준 / 종사자 등
- 이용절차
  - 입소 / 지원서비스 / 입소기간 / 퇴소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예산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항목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에서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노인 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기준 등 조사
- 국외(독일, 영국, 미국, 호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진행

- 기존 쉼터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터뷰
- 연구소 운영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위기거주홈) 종사자 인터뷰 및 운영 현황 조사

○ 쉼터 이용 학대피해장애인 인터뷰

- 연구소 운영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위기거주홈) 이용자 인터뷰

II

국내의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운영방안

VOICEYE
voiceye.com

Ⅱ 국내의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운영방안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원 가정 또는 원 거주시설에서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6곳 지정되어 있고,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증대에 따라 학대신고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아동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2016년 기준 52곳 지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 운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쉼터 운영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피해자 쉼터로는 범죄행위의 유형으로 나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이 있으며, 피해자 유형으로 나눈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학대피해노인 쉼터,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이 있다. 또 유형을 포괄하여 범죄피해자면 이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이 있고, 폭력피해자가 아닌 일반적인 취약자를 위한 쉼터로는 노숙인 쉼터와 청소년 쉼터가 있다. 이와 같은 쉼터 중에서 장애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지만 그 수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노인 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의 운영 기준 등을 살펴보고, 이후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무관하게 민간(비영리법인)에서 설치하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다. 또 민간(비영리법인)이 설

치한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특수공동생활가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 가정 복귀, 가정위탁,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된다.

1) 필요성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가정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 일시적이나 일정기간 보호하고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다.

2) 법적 근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에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학대아동보호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을 통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VOICEYE
voiceye.com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일 : 2016.9.23.)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9.23.)

3) 주요 기능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뿐 아니라 유기·방임에 대한 신고접수현장조사, 피해 아동 응급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6a).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4) 현황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전국에 4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었으나(보건복지부, 2016b), 2016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7월 기준으로 52개소로 증가하였다. 쉼터 입소아동 수는 242명이고 이중 장애아 수는 35명이다(윤소하, 2016).

〈표 1〉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2016년 7월 31일 기준)

구분	쉼터수	입소아동현황(명)	
		입소아동수	입소아동 중 장애아수
계(개소)	52	242	35

출처: 윤소하(2016)

VOICEYE
voiceye.com

5) 설치 및 지정(보건복지부, 2016a)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비공개 특수 공동생활가정이다. 따라서 시·군·구청장은 민간(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특별히 지정하게 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달리 민간(비영리법인)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반 행정절차는 일반 공동생활가정 신고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절차만 추가된다. 만약 기존 일반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기존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수리 사항 중 신고조건을 변경 신고 수리하여 진행한다. 즉,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변경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법인 공모하고,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운영법인이 설치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학대 피해아동쉼터로 지정 및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한다.

6) 설치기준(보건복지부, 2016a)

- ○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서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2015.1.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예외적으로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주택 이전 시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함
- ○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실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실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 제공이라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므로 쉼터 내 사무실을 설치 할 수 없음
- ○ 종사자 : 보육사 3명 이상, 심리치료전문 인력 1명 이상 배치. 단 보육사 3명 중 1명이 원장 직무 수행 가능

7) 이용 절차

(1) 학대피해아동 입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하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소재지 시·군·구 관내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아동 입소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피해아동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절차는 선 구두 요청한 후 , 피해아동 입소 후 공문 처리를 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 이를 피해아동 발생지 관할 시·군·구가 쉼터 소재지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협조요청'하고 보고를 받은 쉼터 소재지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소를 결정한다.

(2) 학대피해아동 퇴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위탁이나 일반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학대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가 가능하다.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 가정 복귀·가정위탁·일반 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쉼터원장과 당초 아동을 의뢰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서로 상의하여 피해아동입장에서 최선을 선택한다.

8) 예산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은 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국고지원을 보면, 개소 당 인건비 82백만 원(20,500천원×4명), 운영비 12,000천원, 사업비 30,000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용득 외, 2016)

2. 학대피해노인 쉼터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쉼터는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VOICEYE
voiceye.com

1) 필요성 및 목적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노인과 가해자가 함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경우 일시적이나 일정기간 보호하고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일시보호를 위해 이용 중인 시·도 지정의 양로·요양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학대발생이후에 가족기능 회복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대가해자 및 해당 가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인 학대피해노인쉼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학대가해자 및 가족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원 가정으로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피해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법 제39조의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3) 주요기능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해 재학대 발생 예방 및 가족기능회복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6c).

○ 숙식 및 쉼터생활 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이며, 퇴소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기관 후원금 등으로 지원

○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전문상담(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비롯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지원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 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그 밖의 쉼터 보호노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4) 현황(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1년부터 쉼터는 16개 광역 시·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쉼터의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모두 일컫는다.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말한다.

2015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보호노인 현황을 보면 입소자가 559명, 이용자가 886명으로 총 1,445명이다. 결국 기관 당 연평균 90.3명, 월평균 7.5명이 입소 및 이용한 것이다.

VOICEYE
voiceye.com

〈표 2〉 2015년도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계
입소자	122	437	559
	21.8	78.2	100.0
이용자	219	667	886
	24.7	75.3	100.0
계	341	1,104	1,445
	23.6	76.4	100.0

5) 지정 및 운영주체(보건복지부, 2016c)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해당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지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지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위탁관계 변경 시 기채용인력 고용 및 퇴직적립금 승계, 관련 문서 인계 등 쉼터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쉼터 임대를 위해 투자된 법인 전입금은 전액 반환
- 쉼터 예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 단, 후원금은 예외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쉼터 위탁법인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쉼터운영 위탁법인 변경 가능

- 위탁법인 변경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적 심사 및 평가

6) 설치기준(보건복지부, 2016c)

(1) 규모

○ 1인당 연면적 15.9㎡, 공용 99㎡ 이상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타 가족 및 타 노인복지시설 연계 등을 위해 입소한 대상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2) 시설 및 설비기준

○ 노인복지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 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준용

① 침실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 이상,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 남녀는 구분하여 방을 사용(부부일 경우 사용 할 수 있음)

○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설치

② 세면장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함

○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 설치할 수 있음

③ 그 밖의 시설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 설치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사용

(3) 종사자

○ 쉼터의 장(소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이 겸직

- 쉼터업무 총괄 관리

○ 중간관리자(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무급 관리직

- 행정 및 회계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쉼터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개입계획 및 사례관리 지원 등

○ 사회복지사 1인(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쉼터 입·퇴소 관련 행정, 회계, 실적보고,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입소자에 대한 상담 등

○ 요양보호사 3인

-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활력증후 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그 밖에 쉼터사회복지사 지원 업무 등

○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

7) 이용 절차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대사례가 발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학대당한 노인의 쉼터 입소가 의뢰된다. 그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의 협회에 따라 입소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소를 위한 초기면담과 입소가 결정된다. 해당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송서비스를 통해 쉼터로 오게 된다. 이 때 초기에 먼저 건강진단을 받고 노인학대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및 개입계획이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일정 기간 서비스가 지원된 후에 퇴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1) 입소

쉼터의 입소는 만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를 대상으로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단,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동의만으로도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를 위한 이송은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한다. 입소의 기준은 피해자가 의뢰되는 순서에 따른다. 단 동시에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순으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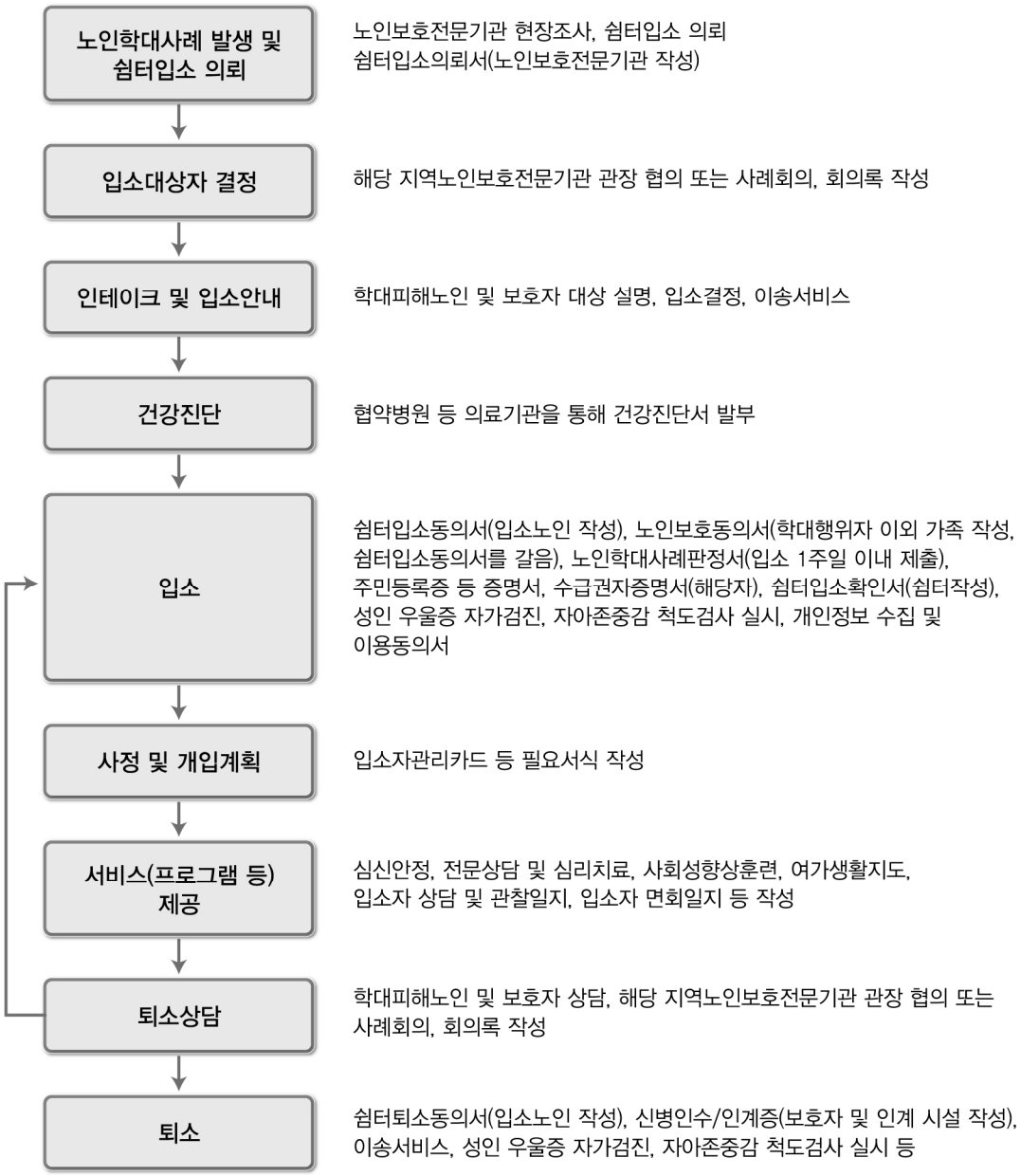
그러나 치매노인이나 노숙노인은 입소가 불가능하다. 치매노인의 경우 보통 일시보호 후 증세에 따라 적합한 노인복지시설에 연계하고,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노인은 입소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나 노숙이더라도 유기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입소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이다.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하다.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의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도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2) 퇴소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의 경우 에는 퇴소 대상이 된다.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하는 자 중에서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노인복지시설로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퇴소를 위한 이송은 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한다.

다만, 퇴소인 경우라도 법정 지정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질병의 경우에는 퇴소를 권고하거나 병원에 연계한다. 또한 치매증상 악화 등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요양보호시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쉼터의 상황의 확인하고 사례

판정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다. 퇴소 단계에서는 학대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인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자아존중감 척도 등의 검사를 실시한 후에 퇴소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1] 노인쉼터 입·퇴소 서비스 절차

VOICEYE
voiceye.com

(3)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운영

한편, 피해노인 쉼터 보호(최대 4개월) 이후에 원 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 이후 학대피해노인보호 지정 양로시설로 입소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8) 쉼터의 서비스 내용

쉼터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이다.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이며, 퇴소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기관 후원금 등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이다. 이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및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때 전문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진행도 가능하다.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가 지원되는 데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급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학대 피해로 인한 의료비 외에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의료비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이 해당된다.

셋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이다. 이는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을 의미하며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복귀 또는 자녀와의 동거나 시설의 입소도 지원한다.

넷째,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쉼터에 제출하면 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이후 프로그램 진행 후 쉼터에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의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피해자 유형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13세 미만),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이 있다.

2) 입소대상 및 입소요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성폭력피해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남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입소요건으로는 성폭력 피해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하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3) 입소절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통해 접수 및 상담을 거쳐 연계를 받아 입소를 진행한다.

4) 입소기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시설의 유형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VOICEYE
voiceye.com

〈표 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유형	입소기간	연장기간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추가 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까지 연장 가능
특별지원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5) 지원내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①피해자 등(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숙식제공, ②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④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⑤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실시한다.

6) 퇴소사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퇴소는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며, ①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보호 기간이 끝난 경우, ③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④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 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7)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보호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0㎡ 이상	-	-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03㎡ 이상	-	-	-

비고: 보호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기준

① 건강 및 생활 관리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영유아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된다.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규정

○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운영 방침
-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 보호시설의 입소요령
- 보호시설의 이용수칙
- 그 밖에 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③ 장부 등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 회의록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 문서 접수·발송대장

○ 사업에 관한 장부

-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후원금품 관리대장
- 각종 증명서류

(4) 종사자의 수

〈표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별 종사자 수

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정원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2	2	2
	보조원		1	1	2
	총계		4	4	5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1	1	1
	상담원		3	3	3
	보조원		1	2	3
	총계		5	6	7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1	1
	상담원			4	4
	보조원			2	2
	총계			7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상담원	1			
	보조원				
	총계	2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상담원	1			
	보조원	1			
	총계	3			

비고 1.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의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3) 보호시설의 종류

- ○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지원내용

- ○ 숙식의 제공
-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지원을 할 때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게는 숙식 제공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주거편의 제공 업무외의 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5) 지원 절차

○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통해 가정폭력피해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6) 보호시설의 퇴소

○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음

7) 종사자의 수

○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명과 상담원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
○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VOICEYE
voiceye.com

〈표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

구분	단기/장기/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5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30명 이하	31명 이상	
보호시설의 장	1	1	1	1
상담원	2	3	4	1
총계	3	4	5	2

※ 다만, 장애인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0명당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1) 이용 대상 및 운영주체

이용대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고, 운영주체는 국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기타가 가능하다.

2) 입소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입소가 가능하다.

3) 퇴소

- ○ 본인 의사에 따라
-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음

4) 지원 내용

- ○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5) 시설종사자의 자격

시설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반 행정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 ○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또는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 전문 상담사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 또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쉼터

1) 목적

-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2) 입소기간

- ○ 일시쉼터 : 24시간 ~ 7일
- ○ 단기쉼터 : 3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최장 9개월)
- ○ 중장기쉼터 :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가능(최장 3년)

3) 유형별 청소년 쉼터(2014. 8. 기준)

청소년 쉼터의 유형은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로 구분된다.

〈표 7〉 청소년 쉼터의 유형

구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설치 수	22	50	37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사회복귀	자립 지원

VOICEYE
voiceye.com

구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최장 9개월) 단기보호	2년(최장 3년)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 기능	일시보호,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단기·중장기쉼터와 연결 • 식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 대상 •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서비스 제공
비고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4) 제공 서비스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활동

○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

○ 의료서비스(임신반응테스트시약 제공, 구충제 제공, 콘돔 제공, 연계병원 검사, 응급치료, 건강검진(발달상태, 성병 등)

(1) 일시 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

○ 가출예방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적극적 발견 및 보호

- 거리아웃리치(상담) 등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을 적극 구조·발견하고 고정형 일시쉼터는 7일 이내 보호 및 사례관리 실시

○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 단기·중장기쉼터,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정보 제공(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협조) 등

○ 보호시스템으로서의 접근 유동

- 기본적 먹거리, 응급치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 쉼터 및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기능 추가 가능

⑵ 단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등

○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가정복귀 지원 등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

○ 청소년의 욕구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쉼터의 직접서비스 및 외부자원 연계·활용한 간접서비스 제공

○ 재가출 및 비행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⑶ 중장기청소년쉼터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관리 서비스

- 의식주 생활관리: 취침 및 기상, 식사, 공동생활 규칙 준수
- 경제 생활관리: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 건강관리: 장기적 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 등
- 문화체험 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 직업지원서비스

- 직업능력평가: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훈련: 인턴쉽 체험, 구직전략 세우기 등
- 취업지도: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VOICEYE
voiceye.com

○ 학업지원 서비스

-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 개인학습 지도: 학습방법 교육 등
- 학비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개인상담
- 사례회의
- 집단상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회기술 훈련, 대인관계 훈련, 자존감 향상훈련, 진로탐색,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교육, 금연교육, 금전관리, 경체교육, 식습관,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

III

외국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운영방안

VOICEYE
voiceye.com

Ⅲ 외국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운영방안

1. 미국 장애인 주거정책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1) 장애인 주거정책 개요

미국의 장애인주거는 정책의 방향과 법, 규칙, 예산은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주거복지사업의 기준설정 및 배분과 관련해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그리고 쉼터운영을 포함한 각종 지원 등 사업의 공급주체는 대부분 민간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주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들 수 있다. 공정주택법은 1968년에 시민권법의 일부로 입법화 되었으며 주택제공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인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는 주택의 임대 및 판매와 모기지 융자를 포함하는 주택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택, 아파트 건물, 콘도미니엄 단지에 입주자에 대한 차별, 위협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공정주택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FHA)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택제공자들에게 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호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자는 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문
- 내부에 접근 가능한 루트를 갖춘 주택,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욕실과 부엌, 이용 가능한 콘센트, 전등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
- 손잡이 바가 설치된 욕실, 휠체어 타고 일 할 수 있는 부엌 등

미국도 많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원은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제공은 저렴주거(affordable housing)와 임시주거(temporary housing)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저렴주거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임시주거는 홈리스 위기에 처한 사람들 특히 성인이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응급주거로 제공하는 쉼터이다. 임시주거는 며칠 이내 단기간에 머무르게 된다.

(1)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현재 미국 장애인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특징은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는 저렴주거의 공급보다는 다양한 기금과 재정 및 예산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은 뉴딜정책의 하나로 출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에서 지원하는 주택프로그램이다. 1937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은 소득수준이며 저소득 장애인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기준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제시하며 신청자가 살고자 하는 지역(county)이나 광역권의 중위소득 50% 이하(빈곤층) 또는 80% 이하인 사람들로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공공주택 입주를 신청하면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대기자 명단에 포함시킨 다음 입주가 가능하다. 1960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1961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민간임대주택

미국의 저렴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역할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연방정부는 저렴주거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저소득층 주택세금크레딧(low-income housing tax credit : LIHTC)이나 HOME 투자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택의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결정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LIHTC는 민간 임대주택 개발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소득세액을 공제, 감면해줌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으로, 1986년 제정되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개발업자는 임대주택 지구에 있는 임대주택의 20%이상을 그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임대하거나, 40%이상의 주택을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에게만 임대해야 하며 적어도 15년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공급된 저렴주거의 임대료는 지역 중위소득의 30%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증진하는 방편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저렴주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오늘날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주체

VOICEYE
voiceye.com

들이 장애인을 위한 일반주택 또는 그들의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많은 비영리주택조직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LIHTC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를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이나 감각장애 장애인을 위해 주택의 5%는 이동장애인에게, 2%는 감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 주거바우처(임대료 보조)

미국의 주거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은 민간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바우처를 통하여 지원하는 세입자 기반프로그램이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 가운데 재원이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 주거바우처는 Section 8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일종의 주거비 보조제도로 1937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속되어 왔다. 주거바우처는 연방정부인 HUD로부터 펀드를 받아 저소득층 가정에 주택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 각 지역의 공공주택공사(Public Housing Agencies : PHA)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PHA는 지방정부 기관이지만 보통 주정부의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다. PHA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HUD의 위탁을 받아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을 운영하고 또한 section 8에 의해 주거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거바우처는 일종의 저소득 주거임대료 보조로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보편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Section 8은 2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바우처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아 제시하고, 입주가 가능하다. 주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파트 명단에 관한 정보는 주로 지방정부 주택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다른 종류는 아파트 건물에 Section 8이라고 붙어 있어서 해당 아파트로 입주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며, 대신 해당 아파트를 떠나면 혜택도 중단된다. 다수의 노인거주 아파트 건물들은 이런 방식이 많다. 즉 한 가지는 임대료 보조이나 다른 종류는 주택보조가 되는 셈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저소득 가구의 월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주거비와 매년 일반인에게 공시되는 공정시장임대료와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바우처는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지불된다. 대상은 저소득층 임차인이며 지역 중위소득의 80%까지 해당된다.

주거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주거바우처를 이용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주택을 지원하는 방식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한 거주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다.

④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

Section 8이 대다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바우처임에 비해, Section 811은 특히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811은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기타 필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지원에 해당되는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하게 된다. 즉 저렴주거 (affordable housing)에 추가로 다양한 지원(support)까지 포함한 서비스이다. 보통 그룹홈, 단독주택,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협동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이 주거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거지원은 30년 전 뉴욕시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제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특히 노숙위기에 처한 노인, 가정위탁이 종료된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 에이즈환자와 가족, 퇴역자 등을 포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예산배분 및 운영

Section 811의 배분은 HUD가 실시하지만 서비스 공급과 운영은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특히 HUD가 중시하는 지침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안전이 보장된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서비스 대상

Section 811의 대상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과 노인들도 포함된다. 소득기준은 지역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거나 전환 주거 또는 임시/응급쉼터에서 생활하는 연방법에서 지칭하는 홈리스를 포함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제공 서비스

주거지원은 특히 홈리스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와 위기 상황에 적합한 합리

VOICEYE
voiceye.com

적인 해결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지만 적절한 집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것이든 접근이 용이한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들은 그들이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거주인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연하게 설계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사례관리, 급여지원, 교육, 고용, 건강의료지원, 상담, 심리적 돌봄, 위기관리,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기타 응급조치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원의 목적은 노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주거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8〉 미국 장애인주거복지 프로그램

구분	명칭	주요 업무	주체	성격	비고
임대주택공급	공공임대	공급	HUD(연방)	공공	
		배분 기준	지방정부	공공	
	민간임대	예산	국세청	공공	
		자금활용 순위, 주택배분	주정부	공공	
		공급	PHA(공공주택기구), 민간비영리	공공	
	주거바우처_ section 8	예산, 보조금액 결정 및 기준금액 결정	PHA	공공	
		대상자 심사	지방정부	공공	
주거비 보조	section 8 (주택선택바우처)	공급 및 배분	PHA	공공	민간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임대료 바우처 지원
주택과 지원의 결합 (house + service)	section 811 (supportive housing 제공을 위한 특화된 P/G)	재원	국세청	공공	LIHTC이용 장애인 만성홈리스도 해당
		배분	HUD	공공	
		공급 및 운영	민간비영리조직	민간	

출처 : 국토연구원(2010) 재구성

(2) 임시주거(temporary housing) 정책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00만 명 이상에게 응급주거, 전환주거, 영구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홈리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2배씩 늘어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가 분류한 홈리스의 범주로 분류되는 가족과 개인은 다음과 같다.

- 홈리스(문자 그대로 홈리스)
- 홈리스에 처한 사람
- HUD에서 지칭하는 홈리스(장애를 가진 만성적 홈리스는 약물중독자, 심각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손상자, 만성적인 신체장애인 등)
-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

미국의 각 주들은 학대피해자 및 홈리스를 위한 응급주거 또는 임시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각 지역별로 지도를 이용하여 홈리스 지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홈리스 쉼터는 성인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응급주거는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교회 등에 의해 운영되며 각 쉼터는 상담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학대나 폭력피해자들의 경우 홈리스 범주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학대쉼터(domestic violence shelter)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학대피해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쉼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여성들은 비장애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학대쉼터(domestic violence shelter)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과 쉼터 개요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 내 장애인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학대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학대로 인해 노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결합된 응급주거 또는 임시주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연방법, 주법이 각기 구분되어 있듯이 학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각각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학대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주별로 학대 유형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학대를 당한 장애인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지원방식도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

VOICEYE
voiceye.com

르다. 미국의 주는 장애인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장애인이 재가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로 구분,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가정폭력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쉼터가 만들어진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미국에서 쉼터는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을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쉼터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1994년 제정된 여성학대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다. 이전까지 미국 가정에서 매 맞는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1970년대 여성운동 이후 처음으로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주의 입법모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성학대방지법은 1994년 제정 이후 2000년, 2005년, 2012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가정폭력 및 파트너 폭력 예방과 개입에 중심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쉼터(shelter)의 필요성도 이 법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개정법에서 연방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의 범주를 동성애자, 성전환자, 원주민, 이민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학대 쉼터는 학대당한 여성을 보호하는 맥락에 기반하고 있으며 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학대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는 전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대가 발생하여 긴급 피난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학대)위기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971년 처음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가 생긴 이후 2012년 전국에 1,94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당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고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쉼터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쉼터의 규모가 매우 작고, 예산도 빠듯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쉼터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의사소통 지원도구가 부족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실무자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쉼터들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해 편의제공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대다수 쉼터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미국은 주 법률에 근거하여 학대를 정의하거나 지원하게 되므로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방법도 주별로 방법이 상이하다. 본 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학대와 관련한 제반 법률에는 Cal. Welfare & Institution Code 15610, 15630 등이 있다. 일단 장애인과 노인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하면 엄격한 조사와 권익옹호를 위한 지원은 주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P & A)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학대발생시 신고, 조사, 지원 등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학대피해자 쉼터의 설치, 운영과는 무관하다.

캘리포니아의 학대유형은 크게 유기, 노인과 의존적 성인의 경제적 학대, 고립, 방임, 신체적 학대, 기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위협 등의 대우 등으로 구분된다. 노인(65세 이상)이나 의존적 성인(18-64세 성인 중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성인 &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문제를 집중 다루고 있다. 학대가 발생하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지원주체나 방법이 상이하다. 다른 주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재가와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각 주마다 신고의무자가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학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지어 구금도 가능하다. 신고와 관련된 연방 법률은 Elder Abuse and Dependa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Abuse Reporting Act)이다.

(1) 재가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학대발생

- ○ 신고 : 법률 집행기관(지역 경찰서, 보안관) 또는 APS 기관
- ○ 학대 조사 : APS 또는 경찰 : 지역의 APS 워커는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즉시 방문하여 학대여부를 집중 조사함

(2) 재가 외의 학대발생

- ○ 신고 : 법률 집행기관(지역 경찰서, 보안관), 장기돌봄옴부즈만, DPH 등
- ○ 학대 조사 : long-term care facility는 Ombudsmen, state Developmental Center는 조사관 등

Adult Protective Service _ 캘리포니아 Welf. & Inst. Code 15601.10

- 지역사회 내 취약한 성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
- 노인과 의존적 성인 대상의 건강, 안전 목적인 state & local 의무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VOICEYE
voiceye.com

-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게 학대발생시 가장 먼저 대응 & 지원
- 학대당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지원
  : 개별적 욕구와 필요 서비스 평가 ⇒ 안전, 건강, 자립 유지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 위험 여부 판단,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
- 역할 및 제공서비스
  - ✓ 24시간 응급서비스 제공
  - ✓ 다른 지역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의뢰
  - ✓ 다양한 상황과 사회서비스 관련하여 장애인의 옹호
  - ✓ 식사, 교통, 응급지원 등 직접서비스 연결
  - ✓ 장애인의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 및 조정

4) 학대피해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와 쉼터(NYC)

(1) Barrier Free Living 소개

Barrier Free Living(이하 BFL)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NGO단체이다. BFL은 장애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연구단체로 1978년 시작되었으며 "Project Outward Bound"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가정폭력생존자, 홈리스 남성, 아동과 여성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가 BFL는 1980년 뉴욕시 거주하는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해소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주거지원, 지역사회 자원 망 구축, 학대피해자 권익보호, 미래계획 등이다.

○ 미션

Barrier Free Living은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학대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 비전

우리의 비전은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다. 우리는 장애인에게 지지적인 환경인 학대와 편견이 없는 세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세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장애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나 제한을 제거하는 것에 사회적 가치를 둔다.

○ 가치

- 안전은 모든 활동에서 중요하며 기본적인 요소이다.
-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강점과 안전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변화의 능력은 장애인 자신에게서 나온다.
- 개별적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감의 초석이다.
- 자신감은 목표달성의 핵심이다.
- 지원망을 구성하는 개별적 능력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
- 위험감수권과 실패할 권리 등은 성장과 발전의 주요 요소이다.
- 자존감이 있는 성인은 자녀의 성장에 확고한 토대가 된다.
- 아이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 정보는 힘이다. 지식공유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 신뢰는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 총체적 관점은 자기결정, 문화, 영성, 가치 등을 포괄한다.
- 팀워크와 상호존중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 다양성, 존중, 헌신, 협업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삶을 발전시킨다.
- 운동, 감각, 의사소통, 인지, 지적 그리도 다른 사람의 욕구를 포함한 환경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 분노를 포함하여 모든 감정에 대한 건전한 표현은 존중받아야 한다.
- 가정폭력은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다.
-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을 알리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 대표적인 제공 서비스

- Freedom House(응급쉼터) : domestic violence 피해장애인과 자녀가 있는 폭력생존자를 위한 쉼터임. 특히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곳으로 누구든지 이용가능하고 안전함을 추구함. 주요 서비스는 지지집단, 주거지원
- Secret Garden(상담) : 학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non-residential(비거주) domestic violence 프로그램임. 주요 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작업치료, 사례관리, 법률연계서비스, 권익옹호 등
- Transitional Housing(노숙 전환 주거) : 노숙생활을 하는 장애여성과 남성을 위한 안전한 쉼터 기능을 함. 주요 서비스는 안전한 보호처, 사례관리, 작업치료, 주거계획, 기술향상 워크샵 등

VOICEYE
voiceye.com

· BFL Apartments(주거) : 장애인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임. 주요 서비스는 상담, 기술향상 워크샵, 지역사회 활동 등

(2) Freedom House (장애여성 쉼터)

○ 개요

뉴욕시의 Freedom House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가정폭력위기쉼터이다. 위기쉼터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이며, 쉼터는 설립된 지 11주년이 지났다. 이곳은 여성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주여성 등과 같은 학대와 폭력을 당해 도움이 절실한 여성들도 시설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전역의 40개 주 여성 장애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만약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이 입소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쉼터는 최장 18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일상생활기술능력 평가, 직무기술, 재정지원 또는 주거마련을 위한 지원 등이다. 따라서 쉼터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장애여성이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집을 마련하여 쉼터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내 모든 지역에 학대쉼터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며 영세한 편이다. 다른 쉼터와 달리 Freedom House는 비영리조직인 것은 동일하지만 한 번에 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편이다. 이러한 규모와 펀딩을 통한 예산지원 덕분에 학대당한 장애여성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Barrier Free Living은 120개의 영구임대주택인 Barrier Free Living Apartment를 개소하였다. 50개는 여성장애인이 가장인 가족단위의 unit이며, 70개는 요양원에서 돌아온 여성장애인과 학대여성장애인을 위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원룸형) 스타일이다. 여성장애인은 이 9곳에서 지원팀으로부터 상담, 작업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6년 쉼터에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여 이사한 여성장애인은 22가족이다.

쉼터의 입소 여부는 반드시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고 있다. Freedom House는 집이 없는 경우에 입소대상이 되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대와 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mandatory

arrest) 또는 체포우선주의(preferred-arrest)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참고로 APS의 개입은 해당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in-home) 경우에 한하며, 자기주도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취약한 장애인, 노인 등에게 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여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APS가 지원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은 쉼터 이용 대상이 아니다. 집이 있는 피해장애인은 자신의 공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여성장애인
-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및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여성장애인 등
- 다른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등

○ 제공서비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심리정서적 상담제공
- 작업치료
-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인 경우 아동양육서비스, 아동상담 등 양육기술지원
-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특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계획
- 당사자의 권리주장, 자기결정 등 권익옹호 등
- 사례관리 등

○ 이용방법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누구든지 대표전화(212)400-6470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상담접수를 통해 가족폭력 피해자라고 여겨지고 쉼터입소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 영어, 스페인어, 수어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전문 사례관리자 등

VOICEYE
voiceye.com

5) 쉼터 요건(ADA 관련)

미국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의 하나로 자국민과 방문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응급상황이나 재난을 대비한 쉼터나 비상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업무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 또는 지방정부는 필수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비정부기관을 통해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를 누가 운영하든가와 무관하게 ADA에 명시된 안전과 동등한 접근권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ADA를 이행하기 위해 위기쉼터나 재난쉼터의 운영자와 관리자가 구비하거나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요건으로, 주로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1) 사전기획

사전기획을 통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쉼터는 사전에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쉼터에 올 경우 어떤 장비나 도구가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그들을 통해 파악하고 관련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비, 약품, 보조기구 등이 포함된다.

(2) 물리적 접근성

쉼터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물리적 접근성과 환경적 요소들이 중시된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쉼터를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입구 진입로, 현관, 화장실, 욕실, 식수대, 침실, 주방, 응급실장비, 응급상황 안내, 여가 시설 등이 해당된다.

(3) 적격자 기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쉼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설이 사전에 편의시설을 갖추어 둠으로써 다수의 지역주민과 이용하는 곳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하게 해야 한다.

어느 쉼터로 갈 것인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물리적 환경을 먼저 갖추어 두고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은 쉼터를 이용할 때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용이 불가능했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와 의료가 필요한 쉼터에서는 필요하다면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가족들은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과 분리된다면 오히려 외로움과 걱정,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4) 효과적인 의사소통

쉼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직원, 봉사자, 거주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많은 쉼터 이용자인 거주인들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쉼터 서식을 작성하거나 급여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신들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DA에 따르면 쉼터 운영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마련해야 한다. 쉼터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쉼터프로그램은 이러한 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중요한 보조장비나 도구들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제 3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점자, 큰 활자, 오디오 서비스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가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5) 쉼터 환경

시각장애인은 쉼터 배치나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은 가구의 위치나 침대의 위치 등에 의존하여 길을 찾게 되므로 사물의 위치를 바꿀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다른 가구나 주요 물품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거나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 크러치, 보행기를 밀면서 걷는 장애인의 경우 모든 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걸어다닐 때 장애가 되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나 모서리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돌출된 부분이나 공중에 있는 물건들의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제거해야 한다.

쉼터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나 저자극의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 소음이 심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쉼터의 환경은 장애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폐성장애, 불안장애, 두통과 같은 장애특성과 관련 있는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넓은 공간에 작은 조용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안정을 유지하게

VOICEYE
voiceye.com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침대나 방을 배치할 때도 장애인과 상의해야 한다. 특정 장애를 가진 경우 예를 들면 휠체어나 크러치 이용하는 장애인은 가능한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방을 배정하거나 찾기 쉬운 공간이나 위치가 적절하다. 청각이나 난청인 장애인의 경우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나 빛은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6) 지역사회로의 복귀 준비

모든 쉼터는 당사자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살 곳을 확정할 때까지 응급 시에 머무는 임시 피난처이다.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자는 장애인이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거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는 공간인 병원, 요양원, 또는 다른 시설 등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DA는 장애인이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운영자는 장애인들이 새로운 집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

6) 미국 쉼터의 한계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 효과적이고 품질 높은 학대예방과 관리의 한계는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 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부족(위기전화, 학대쉼터, 성학대 프로그램, 지지집단)
- ○ 남성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함
- ○ 쉼터와 임시주거에 대한 장애 특성 고려한 접근성 부족
- ○ 쉼터의 전문화된 지원 부족과 특수 장비/ 기구 부족
- ○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학대와 폭력 감시 부족
- ○ 경찰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끼치는 주요 쟁점을 이해하지 못함

7) 시사점

미국의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는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임시주거(temporary housing) 정책으로서의 응급주거에 해당된다. 쉼터는 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이자 학대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결합된 방식이다. 미국에서 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가정에서 학대당한 여성들을 위한 보호의 방편으로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 피해자 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도 쉼터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쉼터의 규모는 매우 작아서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운영상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르면, 모든 쉼터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 되었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학대당한 장애인을 위한 미국 사회의 정책에 기초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주거정책의 일환으로서 임시주거의 서비스 대상자로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단위와 주단위로 각각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단지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만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미비는 곧 쉼터의 존재가 조항으로만 존재하는 방식이며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설치되고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부방안이 법적 차원과 실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뉴욕의 경우 학대당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순수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의 차별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권익옹호와 미래준비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쉼터는 미국 사회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는, 비교적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쉼터의 역할을 일시적인 돌봄과 주거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도 학대장애인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학대피해자가 심리·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철학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학대에 가장 취약한 대상일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재가와 재가 외 병원이나 시설 등의 장애인의 학대를 사전예방과 사후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VOICEYE
voiceye.com

Service)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학대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대당한 사람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관심을 가지면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에 기초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모든 쉼터를 법률에 의거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정부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누가 운영하는지와 무관하게 미국 장애인법(ADA)에 명시된 접근권과 안전권의 확보와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쉼터는 장애 특성이 고려된 물리적 환경의 구성, 장애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요건들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들이 실제로 미국 장애인복지서비스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중앙차원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공식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독일의 학대피해거주시설

1) 독일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이해

2006년 제정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높은 학대경험에 상응해서 학대예방과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또한 국내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국가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행동계획에는 12개 행동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장애여성의 다중차별의 해체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여성의 학대예방과 지원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

독일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장애여성의 학대 및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는 2011년도에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장애남성의 학대 경험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두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여성과 비장애남성의 학대경험에 비해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은 확연하게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학대를 경험하였고 생활환경(시설 도는 재가)에 상관없이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남성의 학대에 대한 경험도 비장애남성과 비교한다면 모든 유형의 폭력에서 더 높은 수치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1)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frauen-mit-behinderungen-schuetzen/gewalt-gegen-frauen-mit-behinderungen/80650?view=DEFAULT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것으로 독일 사회에 학대피해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성별,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보이는 장애여성의 학대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2)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원칙

독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다름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후 조치보다 예방'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예방이 곧 지원이다'라는 관점 하에서 장애인들에게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또는 구조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설의 학대는 시설의 폐쇄적인 구조, 시설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에 관한 인식 부족, 시설 장애인들의 학대 대응방식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가 성인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자립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가족과 이웃 등 지역사회 속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과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한 폐쇄적인 구조의 해체, 시설에서의 사적인 공간의 보장, 시설 안에 대피소 설치[2],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및 업무 환경의 개선, 담당기관의 시설의 감독 강화[3] 등이 속한다. 또한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근로활동지원, 주거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 원칙이다.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 기회의 제공과 자기결정적인 삶의 환경의 구축을 통하여 학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결정적인 환경의 제공은 장애인에게 '권한강화(empowerment)'로 이끌어 삶에서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자기결정 보장은 장애인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고 대응방법과 지원서비스 등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2) 대피소는 장애인이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우 시설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관청이나 경찰서와 같은 외부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3) 독일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감독 주무기관이 일년에 세 번 이상 비정기적이고 불시에 방문하여 시설을 검증하고 감독.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방문 때는 시설내 영양 및 식사 영역을 검증하며 두 번째 방문 때는 학대와 차별 예방을 위한 영역을 평가하며 세 번째 방문에서는 시설 내 의무적 구조의 설치 여부 및 재난대응체계를 평가하여 시설을 보다 장애인 중심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VOICEYE
voiceye.com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조 하에 종교, 언어, 장애유형을 넘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대 관련 상담기관의 설치도 학대피해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한 지원에 속한다.

셋째, '통합'의 원리이다. 즉 독일의 학대피해장애인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대피해지원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상담기관과 학대보호시설 및 거주시설을 구축하는 대신에 일반상담기관과 일반 학대피해지원기관 안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 독일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교육 또는 비장애여성운동기관에서 장애인의 학대에 관한 내용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학대피해지원기관에서 장애인을 고려하기 위해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조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이 쉽게 지원기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를 구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

독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크게 상담기관과 보호거주시설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대피해여성 전문상담기관

학대피해여성 전문상담기관은 학대피해여성에게 상담과 지원, 그리고 동반을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이다. 학대피해전문상담기관은 모든 유형의 학대나 폭력에 대해 상담하고 여성긴급전화는 성적 학대에 전문화되어 있다. 개입기관(Interventionsstellen)은 경찰보호와 학대보호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다. 이외에도 여성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당기관도 있으며 또한 강제결혼, 스토킹과 같은 특별한 폭력유형에 특화된 전문상담소 및 협력기관이 존재한다.[4)]

전문상담기관은 여성, 남성, 아동을 위한 기관 등 폭력피해자그룹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상담도 이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상담기관 중 여성상담기관의 경우 독일 전역에 약 750여개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상담영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5)]

---

4)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ilfe-und-vernetzung/hilfesystem-und-vernetzungsstellen/80640?view=DEFAULT

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 다양한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일반적 상담기관: 310개소
- 성적학대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 183개소
-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성적학대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 67개소
- 가정폭력시 경찰개입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개입기관: 130개소
- 인신매매 희생자에 특화된 전문상담소:40개소(부분적으로 보호거주시설을 겸비)
- 강제결혼위협을 받는 소녀와 여성에 특화된 전문상담기관: 12개소(그 중 1개소는 온라인 상담도 병행, 일부 기관은 보호거주시설을 겸비)
- 스토킹에 특화된 전문상담기관: 2개소
- 강제생식기훼손문제를 다루는 전문상담기관: 1개소
- 가정폭력을 다루는 주전역에 걸친 3개소의 핫라인(Hotline)과 1개소의 지역 핫라인(Hotline)
- 강제결혼을 다루는 지역 초월의 핫라인(Hotline): 1개소

(2) 개입기관(Interventionsstellen)

개입기관은 모든 유형의 폭력에 일차적이고 단시간의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상담기관 또는 특별한 지원 및 보호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여성거주시설)에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학대피해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상담과 경찰의 보호가능성 및 손해배상금 및 보상금 청구에 관한 정보 등 폭력보호법(Gewaltschutzgesetz)에 따른 법적 과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6)]

(3) '여성폭력' 도움전화

'여성폭력' 도움전화는 학대피해여성이 24시간 무료로 지역 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3년 6월 전 연방에서 시작하였다. 전문적 상담사가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에 상관없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 내 오프라인 상담기관을 중재시켜주고 있다.[7)]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6) http://www.frauenhauskoordinierung.de/schutz-und-hilfe-bei-gewalt/interventionsstellen.html

7)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ilfe-und-vernetzung/hilfesystem-und-vernetzungsstellen/80640?view=DEFAULT

VOICEYE
voiceye.com

(4) 여성거주시설(Frauenhäuser) 및 여성보호시설(Frauenschutzwohnungen)

독일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학대가해자가 주거지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지만 때로는 학대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계속적인 학대에의 두려움을 느낄 때 신속하고 비관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학대피해여성 및 아이들에게 피난처로서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돌봄이 가능한 숙소를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이 제공한다.

여성거주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난처로서 여성을 단순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 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과 지원을 강화한 이후 여성거주시설의 역할은 점점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중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과 학대여성의 자녀에 대한 자녀 지원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가진 여성 또는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 여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서비스 스펙트럼이 더욱 세분화되어 학대피해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고 있다.[8)]

(5) 독일 전역의 지원시설 네트워크(Frauenhauskoordinierung)

학대피해여성 또는 학대피해위협에 처한 여성을 위한 지원기관들이 독일 전역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연방여성부는 여성거주시설의 네트워크기관, 여성상담기관과 여성응급전화의 연방협회의 네트워크기관(bff) 및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네트워크기관(KOK), 그리고 시설과 프로젝트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형성과 경험의 교환을 지원한다.[9)]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역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시의 폭력보호외래시설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내적 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내적 네트워크 기관으로는 성인 또는 아동을 위한 트라우마외래기관(Traumaambulanz), 아동보호그룹(Kinderschutzgruppe), 구조기관(Rettungsstelle), 여성평등대의원회(Frauen und Gleichstellungsbeauftragte)를 들 수 있다. 외적기관으로는 베를린 경찰서, 장애여성네트워크, 폭력피해남성을 위한 상담기관, 레즈비언상담기관,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를 위한 Hotline 등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연방차원 및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은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지원서비스와 상담서비스 유지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9) https://www.bmfsfj.de/bmfsfj/themen/gleichstellung/frauen-vor-gewalt-schuetzen/hilfe-und-vernetzung/hilfesystem-und-vernetzungsstellen/80640?view=DEFAULT

4) 여성거주시설(Frauenhäuser) 및 여성보호시설(Frauenschutzwohnungen)의 운영

독일의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에 관한 연방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성격과 특색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일의 학대피해자를 위한 여성거주시설의 일반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독일의회의 여성거주시설에 관한 보고서[10]와 바이에른(Byern)주 등의 '여성상담소 및 여성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한 지침'[11]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거주시설 현황

여성거주시설은 2011/2012년에 독일 전역에 353개소가 있고 41개의 보호거주시설 및 피난거주시설(부분적으로는 여성거주시설과 전문상담시설에 편입된)이 최소 41개소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 안에는 약 6,800 자리가 있어 매년 약 15,000 ~ 17,000명의 여성들과 약 30,000 ~ 34,000명의 아동들이 여성거주시설과 관련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12]

전국의 여성거주시설의 60%이상이 시설 당 10~20명의 입소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약 20%의 여성거주시설은 20~3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 평균적으로 시설 당 약 20명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시의 경우 2,57명의 여성거주시설 자리가 있으며 진보적인 도시성향을 가지는 브레멘의 경우 10,000명당 3.63명의 자리가 있으며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바이에른(Bayern)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적은 1.17명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13]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은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와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

1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11) Richtlinien zur Förderung der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häuser (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cdf6c10fa2d2b87624a5726ed9b9c731;views;document&doc=11610&typ=RL)

1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13) BMFSFJ/SoFFI, 2011, Bestandsaufnahme Frauenhä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 Unterstützungsangebote fü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VOICEYE
voiceye.com

(2) 목적과 대상

여성거주시설의 본질적인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 학대로부터 여성의 보호
- ○ 긴박한 학대로부터 즉각적인 종결
- ○ 학대피해자의 권리(인지)를 위한 지원
- ○ 학대경험의 (신체적, 심리적)극복과정 지원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만약 여성거주시설에서 내부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여성거주시설의 목적과 학대피해자의 욕구 충족을 실현하고 있다.

학대피해여성과 그 자녀는 그 시설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여성거주시설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4] 이와 함께 학대피해여성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도움을 서로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현재 여성거주시설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입소대상과 관련해서 현재 여성거주시설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여성거주시설에서는 학대피해 당사자라면 국적, 종교,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 강제결혼 위험에 있는 젊은 여성들, 인신매매여성들, 동성애 여성들을 위한 여성거주시설이 많은 반면에 특정한 그룹들, 예를 들면 장애여성, 정신장애인, 중독 여성, 레즈비언 여성 및 성전환자들에게 적합한 여성거주시설의 수는 적은 실정이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중독여성들은 전문적인 돌봄과 관련전문가의 필요, 공동생활로 인한 다른 입소자와의 충돌 가능성, 여성거주시설의 자리 부족 등으로 입소가 늦어지거나 입소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많은 여성거주시설에서 물리적 접근성 및 의사소통 지원의 결핍 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장애여성을 고려한 여성거주시설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체류기간과 입소시간

학대피해여성이 여성거주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거주시설은 다양한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즉 가장 일반적인 기간으로는 3개월을 들 수 있으며

14) 상동

다음으로는 많은 수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 소수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6주 이내로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간 제한 규정은 시설의 크기와 입소가능한 자리 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기간제한을 넘어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연장사유와 체류 시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성거주시설에서는 단기체류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입소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퇴소하거나 또는 평일에 2~3일간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누가 단기체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입소시간과 관련해서 90%이상의 여성거주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대피해여성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각 주에 따라서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입소 시 상근 정식직원 또는 전문가 대신에 (종종 명예직) 직원 또는 다른 시설 입소인이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잘란트(Saarland)주, 작센(Sachsen)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의 경우 업무 시간이외에도 정규 직원이 학대피해여성의 입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함부르크(Hamburg)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입소인이 다른 학대피해여성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브레멘(Bremen)시의 경우에는 정식직원과 시설 입소인이 교대로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지원범위와 내용

현재 여성거주시설은 단순히 학대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거주시설의 절반 이상이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입소자의 사전 및 사후 상담과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여성의 예방적 상담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약 15%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개입기관(Interventionsstelle)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즉, 경찰개입 이후 첫 번째 상담을 여성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에서 학대피해여성과 동반하는 자녀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9〉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지원내용

여성을 위한 지원
• 위기중재프로그램 • 사회적, 경제적, 법적 보장을 위한 정보와 지원 • 필요시 관청과 법원에의 동반

VOICEYE
voiceye.com

여성을 위한 지원
• 폭력경험에 대한 극복을 위한 개별 상담과 지원
• 양육능력 강화 및 어머니-자녀관계 강화를 위한 어머니 상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
• 여성거주시설에서 공동생활 지원
• 그룹 프로그램 제공
• 삶의 계획에 있어서의 지원
• 폭력 없는 자기결정적인 삶의 지원
•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등

이 중 가장 중요한 지원은 '전문적인 심리적 상담'이다. 상담은 모든 여성거주시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입소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부터 학대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담과 퇴소 이후의 계획에 대한상담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으로는 동반지원이 있다. 절반 이상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학대피해여성이 관공서, 경찰서, 가정법원 및 관청을 방문해야 할 때 동반해 준다. 또한 여성거주시설에 살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개별적이고 외래 상담을 지원하며 퇴소한 여성에게도 계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15)]

많은 여성거주시설에서는 지원서비스로서 단순히 학대피해여성 상담과 동반아동의 돌봄 뿐 아니라 아동행복과 관련한 문제를 어머니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학대피해여성의 돌봄 능력과 양육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위하여 여성거주시설 자체 아동교육전문가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부의 전문상담소나 교육상담소의 전문가를 이용하여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 여성거주시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5) 동반자녀에 대한 지원

여성거주시설은 학대피해여성이 어머니인 경우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폭력은 여성 뿐 아니라 그의 자녀도 함께 폭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지원도 여성거주시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여성이 동반하는 자녀를 위한 지원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표 10〉 동반자녀를 위한 지원내용

자녀를 위한 지원	
• 유치원 및 학교전학지원	• 요구 시 개별 돌봄
• 폭력경험에 대한 상담 및 지원(외부 치료사 등)	• 요구 시 학교과제지원
• 교육적 지원	• 여가활동지원
• 취학 전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그룹지원	

또한 약 15%의 여성거주시설에서는 외부아동지원기관을 소유하고 있어 나이가 적은 아동의 경우 온종일,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오후에 여성거주시설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충분한 사람과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된다.[16]

이것을 위해 독일 여성거주시설에서는 한명 또는 두 명의 교육자 또는 사회교육학자를 두고 있지만 아동의 학대경험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거주시설에서 고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내부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을 다루는 다양한 해법의 관점이 다양하기에 외부 전문가 자원들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거주시설에서는 아동보호를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관청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외부 서비스와 협력 작업을 하고 있다.[17]

여성거주시설에서는 모든 연령의 여자아동의 동반입소가 가능하지만 남자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거주시설에서 동반 가능한 연령을 일반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거주시설의 구조상 부엌과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거나 다른 학대피해여성이 나이가 많은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자아동은 입소가능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규정'과 '상담을 통한 입소결정' 규정을 통하여 연령을 초과한 남자아동도 받아들이고 있다.

(6) 전문 인력

여성거주시설의 상주 전문인력팀의 구성은 시설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은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가로 거의 대부분

1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17) 상동

VOICEYE
voiceye.com

의 여성거주시설에 한명 이상이 상주하여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학대피해여성에게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이 많은 경우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여성거주시설 중 60%에서 전문인력팀에 한명 또는 여러 명의 교사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나 특수교사 등 다른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여성거주시설의 수는 적으며 그곳 전문인력이 업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인력 직원이 심리치료나 상담과 같은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규모가 큰 여성거주시설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관리사를 고용하여 재정과 행정을 맡기고 있지만 여성거주시설의 담당기관이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7) 입소 시 필요 물품

여성거주시설에 어떠한 개인적인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들[18]이 있다면 처음 입소기간을 쉽게 보낼 수 있다.

〈표 11〉 학대피해여성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

학대피해자	학대피해자의 자녀
• 증명서: 신분증, 여권 등 • 다른 서류들: 세금증명서, 노동허가증, 사회보험증, 연금보험증서 및 다른 보험증서, 학교졸업장, 집계약서, 급여알림편지(아동수당) 등 • 금전: 현금, 은행카드, 기타 현물 등 • 의료보험증 • 현재 복용하는 약 • 개인적인 물품: 의복 등 • 거주지 열쇠 및 기타 열쇠	• 중요서류들: 출생신고서, 아동수당번호, 예방접종증서 • 현재 복용하는 약 • 개인적인 물품: 의복, 학용품, 좋아하는 인형과 장남감 등

5) 학대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시스템의 구축

학대나 폭력피해경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된다. 폭력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의 대상[19]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보고하고 있

18) http://www.frauenhelfenfrauen-hamburg.de/Was-muss-ich-mitbringen.476.0.html
19) 독일의 가정폭력 범죄통계에서 여성의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가정폭력 보고 중 1/4이 여성이 행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 또한 동성애 커플 사이에서의 폭력, 그리고 직장이나 시설 등에서의 폭력 또는 학대로 인하여 학대피해남성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남성을 위한 남성거주시설 또는 남성보호시설(Männerhäuser)이 독일에 단 두 군데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20] 그래서 학대피해남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의 확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학대를 경험한 장애남성을 위한 거주시설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는 일반지원 시스템 안에 장애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그것의 중요한 예는 전문상담기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독일여성상담기관·여성응급전화협회(Bundesverband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bff)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를 위한 통로"라는 모토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구조적 장벽과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참여하기에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지원, 상담,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기관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표 12〉 bff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내용

- 전문상담기관에 있는 상담가들을 위한 지원: 장애여성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민감성 확대, 상담 및 모든 과정에서의 장애여성을 위한 장벽제거 노력, 특수한 그룹의 지원 등
- 상담자료와 내용의 장벽제거: 쉬운 언어, 수화, 확대자료 제공 등
- 장애인 자조단체 및 지원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등

그 결과 전문상담기관은 장애여성을 고려한 장벽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래서 bff 홈페이지에서 장소, 상담영역, 여러 언어들을 고려한 다양한 상담기관 검색을 제공하고 있고 '무장애' 검색을 통하여 장애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목록화하여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상담기관 시스템 구축은 학대피해거주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학대피해거주시설에 장애인이 체류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지원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전문상담기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성거주시설의 물리적인 구조의 변화,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예: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상담 진행), 장애인 관련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의 채용, 여성거주시설의 자료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 이후로 더욱 강화되어 학대피해장애인이 지

20) http://www.maennerhaeuser.de/index.php/idee

VOICEYE
voiceye.com

〈표 13〉 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여성을 위한 검색구성

구분	검색구성
정보제공	• 정보적인 면에서 쉬운 언어로 자료의 제공 • 정보적인 면에서 수화 자료의 제공 • 정보적인 면에서 오디오 언어로 자료의 제공 • 정보적인 면에서 확대 자료의 제공
편의시설	•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적합한 공간 • 휠체어 이용자가 일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구비 공간
상담 및 기타	• 광학적 구성요소의 제공 • 촉각적 구성요소의 제공 • 쉬운 언어로 상담의 제공 • 수화로 상담의 제공 • 피해자를 위한 방문지원

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고려한 통합적인 학대피해거주시설 구축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보호시설'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족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각 성별의 피해자들이 피난처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폭력 또는 학대) 사건과 그 배경에 대한 전문적이고 가족중심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보호시설에서는 성별, 출신, 장애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모든 유형의 지원이 제공된다.[21]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특히 청소년 영역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가정학대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는 단지 학대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나 지원과 원 가정에서 분리시켜 오랫동안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여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보호시설에서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개별적이거나 전체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족 지원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상담 및 치료 형태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다학문적 협력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22]

21) 상동
22) http://www.socialnet.de/materialien/213.php

6) 독일의 학대피해 거주시설의 시사점

지금까지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독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거주지원시스템에 관해 알아보았다. 독일의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여성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대피해여성의 욕구를 고려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내부적 고민들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존립 문제로서 예산확보의 문제
둘째, 지방 또는 지역 수준에서 통일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불명확성의 문제
셋째, 모든 학대피해여성에게 제공되지 않는 보호와 상담

이렇게 독일의 여성거주시설의 운영방식과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상담의 질적 보장 노력과 제공방식에 대한 고려이다. 독일의 학대피해자를 위한 거주시설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중심에는 '전문적인 심리적 상담'이 위치하고 있다. 상담은 학대경험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담부터 법률적 상담, 그리고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한 상담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상담은 입소 전부터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전문성과 상주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상담사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핵심지원인력으로 여성거주시설에서 상주하며 상담의 질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의 제공은 계속되는 학대로부터의 보호 기능과 함께 본질적인 기능으로 쉼터 안에서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담의 질적 보장을 위해 쉼터는 어떤 인적 및 물리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지,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격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부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지원에 대한 고려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개별적인 쉼터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학대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욕구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반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청소년관청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작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에서도 그 지역의 지원네트워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쉼터 제공서비스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쉼터 운영에서 효율적인 내적·외적 지원네트워크

VOICEYE
voiceye.com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피해자의 동반아동에 대한 고려이다. 독일의 학대피해거주시설에서 학대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동반아동을 위해 학대경험에 대한 상담과 돌봄, 학교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학대피해자 뿐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 고려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쉼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에서, 특히 아동을 동반한 장애여성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동반아동을 어떤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쉼터에서 동반아동을 포함한 학대피해자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강화에 대한 고려이다. 독일의 학대피해지원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학대피해거주시설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 상담에서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쉬운 언어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제공, 시각·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자료 제공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장애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학대피해거주시설에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에도 모든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의 양성과 쉼터 자료의 시각적이고 청각적 수정작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영국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영국의 거주서비스는 단기적인 거주공간 지원과 장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또는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은 학대, 재난, 빈곤 등으로 인해 집이 없는 상태(homeless)가 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쉼터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학대를 당해 집을 나와야 한다면 홈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홈리스를 위한 거주지원, 즉 단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특별히 여성피난처가 있고, 여성피난처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장기적인 거주공간 지원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단기적인 거주

공간 지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여성피난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피난처에 대해 살펴보고, 단기적인 거주공간 또는 여성피난처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1) 장기적인 거주 형태 (housing option)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또는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을 신청할 수 있다(이동석, 2013; Valuing People Now, 2013).

(1) 보호주택

① 돌봄 제공 보호 시설(Extra care and Sheltered housing)

이 유형은 주로 55세 이상의 지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공급과 주거보호를 합친 형태이다. 보호시설(sheltered housing)은 20-40개의 집을 갖춘 작은 블록으로, 라운지, 세탁실, 손님방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동 사용 시설 외에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어 식사를 제공하고 24시간 돌봄이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 시설의 관리인은 시설에 상주할 수도 있고 출퇴근할 수도 있다. 관리인들의 역할은 좋은 이웃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응급상황 시 도와주는 역할 등 전문적인 매니저 역할까지 다양하다. 보호시설(sheltered housing)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장애인에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에게는 긍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 유형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이 함께 살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도움을 근접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응급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거주시설 돌봄(residential care)

거주시설(residential care home)은 숙박과 함께 개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시설 돌봄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건축물에서 자신의 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24시간 돌봄과 음식이 현장에서 제공된다. 과거에는 20명 이상이 있었으나, 현재의 시설(care home)은 규모가 보다 작아져서 4-8명 규모이다. 시설은 공공, 영리, 자선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설(care home)은 돌봄 감독기관(CQC)에 등록하여야 하며, CQC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지방정부의 성인사회돌봄국이 장애인의 욕구를 사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VOICEYE
voiceye.com

시설에 공실이 생기면 개인을 적절한 시설에 배치한다.

현재 영국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care home)자리는 66,000개 정도로, 이 유형은 널리 이용 가능한 익숙한 형태이다. 또한 CQC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건물과 서비스에 일정정도의 질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시설 자체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인의 삶이 지배되고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하고 공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이나 개인 공간이 제한적이며, 누구와 같이 살 것인지, 직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등 개인의 선택과 통제가 제한된다.

(2) 지원주택(supported living)

① 공유가족(Shared Lives)

공유가족(Shared Lives)는 이전의 성인 가족 배치(Adult Family Placement)의 새로운 이름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 금액을 받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즉 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가족의 일부로서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공유가족의 보호자와 삶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원가족과 같은 집에 살 수도 있다. 낮 동안만 공유가족의 집에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유형에서 장애인은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방을 얻는 것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준 높은 돌봄이 제공받기도 한다. 공유가족의 보호자는 지원과 돌봄을 동반한 장기적인 숙소제공, 단기간의 휴식, 낮 활동 지원, 재활 또는 매개적인 지원, 가족관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유가족의 보호자는 그들의 집에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돌봄은 지역정부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돌봄 감독관리 기구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에 의해 관리 감독된다.

공유가족 유형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고 적극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형의 장애인은 보호자의 사회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거주 기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기술적으로 공유가족 이용 장애인은 하숙인일 따름이고, 보호자가 4주전에 알리기만 하면 공유가족에서 나와야만 한다. 또한 이용인과 보호자의 관계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깨질 수도 있다. 보호자와 개인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공유가족 보호자는 이용 장애인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비합리적인 규칙을 강요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이

타적 역할보다는 사업관점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족의 삶에 개인이 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② 집공유(Homeshare)

집공유(Homeshare) 유형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방식인데, 다른 욕구를 가진 두 사람이 상호 이익 하에 숙소를 공유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임대, 소유, 상속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집 공유자(homesharer)'로부터 지원을 받을 조건으로 숙소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상업적 관계 또는 공급자/서비스 이용자의 관계가 아닌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자신의 집을 가진 장애인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고 '집 공유자(homesharer)'는 임대비가 무료인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접촉과 우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중 자신의 집을 갖거나 충분한 공간을 가진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장애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 공유자에게 임대기간이 보증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관계에 따라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③ 지원하숙(Supported Lodgings and supported Accommodation)

지원하숙(Supported Accommodation)은 개인 집주인이 숙박을 임대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처럼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가족공유(Shared Lives)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따라 구분된다.

- CQC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 반드시 가정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안적 형태에 거주할 수도 있다.

이 유형에서 집주인은 지원(support)만 제공하지, 개별 돌봄(personal care)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족공유(shared lives)와는 다르게 CQC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집주인의 지원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대가로 Supporting People Grant를 지급받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Supporting People Team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 유형은 개별 돌봄이 아닌 지원만 필요로 하는 경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선택일 수 있으며, 개별적이고 가정적인 지원 제공 가능하며, 저렴하고, 융통성이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하지 않고, 지방정부마다 계획, 재정공급방식이 다양하다. 또한 임대기간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3) 시나 주택협회로부터의 임대

VOICEYE
voiceye.com

지방정부나 주택협회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개조할 수도 있다. 시나 주택협회로부터 임대하는 집을 '사회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잉글랜드 주택의 17.7%가 사회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시의 주택은 대규모 주택이고, 주택협회의 주택은 보다 작은 건물이다. 한 사람에게만 임대될 수도 있고 두세 사람에게 임대될 수도 있다.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르면 된다.

① 신청자는 이사의 급한 정도 및 필요성에 따라 밴드 A, B, C, D 중 선택하여 신청한다. 밴드 A는 법률적인 홈리스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의료적 또는 사회돌봄 욕구가 있는 지적장애인은 밴드 A 또는 B에 위치하고 우선순위가 높다. 이때 신청원서를 완전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고서나 서신을 보낼 수도 있다.

② 매주 이용가능한 부동산은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 광고된다. 시나 주택협회의 사무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확인 후에 적절한 지역에 그들이 원하는 집이면 입찰을 한다.

③ 우선권이 높은 입찰자 3-4명 정도가 부동산을 직접 볼 수 있다.

④ 그 부동산을 가장 원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서에 의해 한 사람이 집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사회주택은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의 경우 자격이 있으면 전액 주거급여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또한 사회주택의 관리와 유지 서비스는 질이 높으며 잘 관리 감독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택에 대한 욕구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길다. 따라서 적절한 주택을 찾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2)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단기적인 응급 거주공간(temporary emergency housing) (shelter, 2013)

(1) 응급 거주공간의 유형 및 자격 조건

응급 거주공간(emergency accommodation)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개인 홈리스를 위한 응급거주시설(집)이 가장 기본적이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응급거주시설이 존재한다.

- 추운 날씨(cold weather) 또는 겨울(winter) 피난처(shelters)
- 야간 피난처(nights shelters)

○ 응급 호스텔(emergency hostels)
○ 청년 홈리스(young homeless people aged 16 to 25)를 위한 야간 거주
○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여성피난처(women's refuges)

이와 같은 응급 거주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이 없는 상태, 즉 홈리스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홈리스의 자격을 얻을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
- 영국 또는 어느 다른 나라이던 살 곳이 없는 경우
- 학대, 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에 있을 수 없는 경우
- 가족과 함께 살 곳이 없는 경우
- 현재 거주하는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정에서 쫓겨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 현재 가정이 배, 이동 집, 카라반 등인데, 이를 정박 또는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
- 현 거주지의 인구밀집이 너무 높고,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거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앞으로 28일 이내에 홈리스가 될 것 같은 경우
- 집주인에 의해 퇴거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이 28일 이내에 퇴거명령을 내린 경우
- 친구 또는 친척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28일 이내에 퇴거를 요청한 경우

(2) 운영 방법

단기적인 응급 거주공간은 주로 지방정부(시청)에서 제공한다. 만약에 지방정부가 임대한 플랫(flat, 연립주택) 등이 없으면, 호스텔 비용(침대와 조식)을 지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든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홈리스에게 일시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신청 및 심사

거주할 곳이 없으면 홈리스로서 지방정부(시청)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정부(시청)에서 심사 후 신청인의 상황에 적합한 일시적 응급 거주공간을 제공한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VOICEYE
voiceye.com

○ 홈리스이거나 홈리스가 될 위험이 높은 경우
○ 사회복지급부(assistance)의 자격이 있는 경우
○ 우선순위가 필요한 경우

만약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홈리스가 되었다는 의심이 들지라도, 위의 세 가지 상황이 모두 충족되면 일시적 거주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홈리스이고, 사회복지급부 자격이 있지만 우선순위 욕구가 아닌 경우에도, 시청은 응급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는 아니다.

(4) 응급 거주공간의 제공 서비스

단기간 이용 가능한 응급 거주공간을 제공한다. 홈리스 가족은 지방정부가 임대한 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응급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런던 등 대도시의 경우 응급 거주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시의 경우 다른 지역의 일시적 거주공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응급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 지방정부는 개인 또는 커플에게 응급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호스텔과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숙박시설(bed and breakfasts, B&B)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중 의존적인 아동이 있거나 임신부가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반드시 제공하기 위해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숙박시설(B&B)에만 머무를 수 있다.

아침식사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란 게스트 하우스 등과 같은 유형의 숙박시설이다. 지방정부가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6주 이후에도 계속 B&B에 머무르게 되면 지방정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가족이나 임산부의 경우 다른 거주공간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B&B를 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부족한 경우 임산부나 가족의 경우에도 B&B에 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B&B에 배정된 경우 6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거주인이 혼자 있는 경우 B&B가 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5) 거주기간

신청 및 조사에 따라 거주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처음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머무를 수 있다. 추가 조사결과 장기적 지원이 적합한 경우 장기거주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적절한 장기거주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응급 거주공간에 머무를 수 있다. 또 지방정부가 신청인이 지역연고

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로 의뢰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살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 응급 거주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의뢰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조사결과 장기적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정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전달하여야 하고, 지방정부의 결정이 전달되면 거주인은 바로 즉시 떠나야 한다. 또 조사결과 홈리스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사회복지급부 자격이 없거나, 우선순위 욕구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떠나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홈리스가 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인이 대체 거주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 동안 응급 거주공간에 머무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신청인에게 퇴거일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퇴거, 의뢰 등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응급 거주공간에 머무를 수 있다.

(6) 응급 거주공간 비용 지불

응급 거주공간에 대한 임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호스텔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식사비용이나 세탁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급여를 청구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거주급여(housing benefit)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급여액이 응급 거주공간 임대비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7) 개인적인 가구나 물품의 구입 및 비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응급 거주공간에 개인적인 가구나 물품을 비치할 수는 없다. 거주인이 응급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동안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적인 가구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정부는 거주인의 개인적인 가구나 물품을 보호할 책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개인적인 가구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대신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8) 응급 거주공간 서비스에 대한 이의제기

다른 거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응급 거주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부적절한 공간을 제공받은 경우, 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지방정부에 알려야 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의 거주 상담사(housing adviser)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 응급 거주공간 퇴소

거주인이 더 이상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거주인의 상황에 대해 계속 조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응급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피난처(Women's refuges)[23)]

영국 전역에 500개 이상의 학대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피난처가 존재하고 있다.

(1) 이용 대상

이용 자격은 남편, 전 남편, 친척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여성에게 주어진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남성의 접근금지 등을 통해 여성이 원 가정에서 지낼 수 있지만, 원 가정에서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 피난처(Women's refuges)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도 상관없다. 다만 자식을 동반할 수 있으나,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모든 피난처가 동반입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2) 이용 신청

여성응급전화(Women's Aid)에 전화를 하면 여성피난처를 연결해 준다.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원 가정과 동일 지역의 여성피난처 연결도 가능하고 멀리 있는 여성피난처 연결도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 지역의 피난처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난처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심사를 하여 홈리스 자격이 주어지면 지원을 하게 된다.

(3) 여성피난처 운영주체

여성피난처는 주로 여성응급전화(Women's Aid)에 의해 운영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응급전화를 공동운영하는 개별 여성피난처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도 있다.

(4) 여성피난처 운영 방식

많은 여성피난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피난처는 없다. 많은 여성피난처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과 자

23)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homelessness/emergency_accommodation_if_homeless/womens_refuges

원활동가를 보유하고 있다. 피난처에 있는 직원은 대부분 모두 여성이며, 이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일부 여성피난처는 아시아, 이란 여성 등 특정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별도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여성피난처는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여성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피난처는 일상적인 집과 유사하다. 일부는 더 크기도 하고, 목적적으로 지어진 건물일 수도 있다. 일부는 한 가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피난처에서 이용자들은 독방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아동과 방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실, 부엌, 욕실 등은 다른 거주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요리는 거주인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요리를 공유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거주인들간의 합의에 따른다.

피난처에 머무르는 동안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임대비용, 임대기간,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의 취침시간, 세탁기 사용시간, 전화사용 시간, 타인의 방문, 비밀엄수 등에 대한 규칙이 포함된다.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은 피난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또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난처에는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⑸ 거주 비용

여성피난처에 머무르는 동안 거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청에 거주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집의 임차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4주 동안 두 집의 임차비용을 포괄할 정도로 시청에 거주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⑹ 장기적 거주에 대한 계획

피난처에 있는 직원은 앞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직원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여성피난처로 들어온 사람은 법적으로 홈리스로 구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홈리스를 위한 거주정책을 신청할 수 있고, 직원은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 주택에 지원을 하거나 개인적인 월세주택을 구하는 것을 직원들이 돕기도 한다.

4) 시사점

영국의 응급 거주공간 및 여성피난처를 살펴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VOICEYE
voiceye.com

첫째,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지원방식 운용이다. 응급 거주공간 또는 여성피난처를 지방정부가 운영한다고 하여도 학대피해자들이 이 공간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홈리스가 되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거주급여를 받아 임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즉 지방정부는 홈리스 등을 위해 임시적인 거주공간을 항상 마련해 두고 있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월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지방정부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주거급여를 받아서 지방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나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직접 거주공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는 것은 이용자의 자존심이나 당당함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인 전용 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급 거주공간이건 여성피난처이건 장애인 전용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즉 학대, 빈곤 등의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대피해자만을 위한 거주정책이 아니라 살 집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대를 당해 집을 나와야 한다면 홈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홈리스를 위한 거주지원, 즉 단기적인 거주공간 지원 속에서 학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 장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단기적인 거주공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장기적인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다양한 장기적인 거주공간 지원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단기 거주공간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호주의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호주의 경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집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홈리스를 위한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로 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민간 기관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호주(South Australia)의 위기(긴급) 상황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신청 및 결정

SA주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전화 등의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 Homelessness Gateway (including families)
- Youth Gateway (aged 15 to 25 years)
-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Gateway phone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지역사회 학대를 겪고 있거나 탈출 중인 경우
- 주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병원, 교도소 등 제도적 관리에서 풀려나 갈 곳이 없을 경우
- 자동차나 임시보호시설에서 머무는 경우
- 지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집에 머물고 있거나 사생활이나 신변보장이 거의 되지 않은 과밀한 환경에 거주 중인 경우
- 퇴거 고지를 받은 경우
- 파트너와 헤어져 갈 곳이 없는 경우
- 최근 실직되어 비용 지불이 곤란하거나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
-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로서 집에서 쫓겨난 경우

호주 지방정부는 청소년, 가족, 미혼성인, 지역사회 학대피해자에 대한 거주서비스(accommodation services) 제공을 위해 주택 및 홈리스 영역의 Agency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부기관, 특수서비스제공자와 지역 홈리스 문제 파악,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프레임 워크 강화 등의 사안을 놓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다. 각 라운드 테이블은 홈리스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지역동맹계획을 제시하고, 이 계획은 주 전체의 계획 절차와 관련되게 된다.

2) Homelessness Supportive Housing Program

(1) 개요

이 프로그램은 12개월의 단기거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또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및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VOICEYE
voiceye.com

필요를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홈리스에게 임차기간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ousing SA와 Community Housing Providers (CHPs)는 프로그램에 따라 재산과 임차주택을 제공 및 관리하고, Specialist Homelessness Service (SHS) 제공자 및 기타 비정부기관은 임차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2)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Housing SA가 임차대상 주택의 소유주일 경우, 공공 주택 입주 자격이 있어야 한다.
- Community Housing Provider (CHP)가 소유주일 경우, 지역사회 주택 입주 자격이 있어야 한다.
- 1차, 2차 또는 3차 홈리스거나 홈리스 지원 주택 프로그램 정책의 기준에 따라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사례 관리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조건과 임대차 유지를 위한 지원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3) 이용자 추천

임차주택 공고 시, agency는 최대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추천양식을 이용하고, 공고에 기술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gency는 클라이언트 추천에 앞서 아래 사항을 실시해야한다.

- 해당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적합한지, 다른 지원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타켓 그룹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조건을 이해하고 장기 숙박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한다.
- 해당 이용자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다른 agency와 연락하여 그들의 정보와 추천에 대한 견해를 받아야 한다.
- 추천서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다른 기관과 개인정보를 교환해야한다.

Agency는 추천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해당 공고를 한 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해당 기관이 결정을 통지하면 이것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는 임차가 시작되기 전 SHS의 사례관리에 동의해야한다. 사례관리 계획은 이용자와 SHS 직원 사이의 기밀이고, 아래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 ○ 이용자의 욕구와 이슈
- ○ 이용 가능한 자원과 취할 조치
- ○ 이용자의 목표와 성과
- ○ 이용자가 임차를 유지하고 이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5) 주택관리

임차주택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관리된다.

- ○ 이용자에게 키 전달
- ○ 임대료 설정, 부과 및 검토
- ○ 임차주택의 컨디션 검토
- ○ 파괴적인 행동과 임차주택에 관한 문제 관리

(6) 기간 종료

이용자가 거주지를 떠나게 될 때, SHS는 이용자가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출구 전략을 개발한다. 이것은 사적인 임대차와 같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찾고, 신청하는 것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

또 SHS는 임차인이 대체할만한 적합한 장기 숙소를 찾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 주택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주택 옵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Housign SA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사설 임대 거주시설로의 임대료 지불 도움
- ○ 민간 임대 연락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임대 재산을 찾고 확보하는 것에 대한 도움과 옹호
- ○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입
- ○ 공공, 원주민 또는 공동체 주택 임대
- ○ 기타 가능한 주택 옵션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 옵션 약속

(7) Agency 관리

펀딩 계약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전문 홈리스 Agency는 Homeless2Home(H2H) 이용자 및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한다. H2H 시스템은 South Austailia 전역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응답을 보장하고, 기관이 고객의 상황, 제공된 서비스 및 발생한 결과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화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Agency는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기록을 검색하고, 이용자 정보를 등록 및 업데이트하고, 사례 계획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등을 할 수 있다.

3) 민간 기관에 의한 지원

SA주는 노숙인 지원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24] 지원기관은 주로 민간기관으로 SA주 내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민간지원기관은 Familes, Adults, Young people, Domestic or family violence,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처럼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민간기관은 지원 대상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사회에서의 학대피해자, (성)폭력 피해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단기 쉼터,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일부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Homelessness Gateway

이 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 specialist Gateways나 장기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 및 이관
- ○ 적절한 서비스에 연결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거주공간(emergency accommodaton), 음식 등 제공
- ○ 기타 지원
- ○ 무료 제공
- ○ 가족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지원 : 학대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개별 또는 그룹 상담(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비용 발생)

(2) Inner Southern Homelessness Service

이 기관의 서비스 대상도 홈리스이거나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또

24) 마지막 페이지 참조

한 판자집 거주자, 거주시설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에는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가정 내 지원, 자립과 독립 유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로 UnitingCare Wesley Bowden Inc 라는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가족·재정 상담, 알콜과 복지 권리 전반에 걸친 지원, 지원 중인 고객에 대한 옹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Marion Road, Marion, and primarily operates across the City of Marion, the City of Holdfast Bay and the City of Mitcham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도 가능하다.

(3) Riverland Homelessness Assertive Outreach Program

이 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홈리스거나 아무데서나 자는 가족 또는 개인이다. 거주공간 획득 지원, 긴급한 공급품 획득 조력, 옹호 및 이관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Life Without Barriers라는 기관이다.

(4) Eastern Adelaide Domestic Violence Service

이 기관의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 학대를 경험하고 있거나 탈출 중인 여성과 아동이다. 이 기관에서는 거주공간 지원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14〉 홈리스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분류	기관명
Families	• Aboriginal Youth Early Intervention Program • Ceduna Homelessness Service • Centacare Findon Family Housing • Eastern Adelaide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Financial Services Clinic • Fleurieu and Kangaroo Island Homelessness Service • Homelessness Gateway • Housing Legal Clinic • Inner North Homelessness Service • Inner Southern Homelessness Service • Limestone Coast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Murray Bridge Adelaide Hills Homelessness Service • Outer North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Outer Southern Homelessness Service • Port Augusta Homelessness Service

분류	기관명
Families	• Port Lincoln Homelessness Service • Riverland Homelessness Assertive Outreach Program • Riverland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Southern Country Homelessness Service and Riverland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Street to Home Service • Together 4 Kids • Western Adelaide Homelessness Service • Whyalla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Youth Focus) • Yorke and Mid North Homelessness Service • Young Family Support Program (up to 25 years old)
Adults	• Aged Homelessness Assistance Program • Catherine House (women only) • Ceduna Homelessness Service • Common Ground • Community Transition Worker (Adelaide Day Centre) • Community Transition Worker (Baptist Care SA) • Community Transition Worker (Hutt Street Centre) • Community Transition Worker (Uniting Care Wesley) • Eastern Adelaide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Ex Custodial Homelessness Support Services and Integrated Housing Exits Program • Financial Services Clinic • Fleurieu and Kangaroo Island Homelessness Service • Homelessness Gateway • Housing Legal Clinic • Inner North Homelessness Service • Inner Southern Homelessness Service • Limestone Coast Generic Homelessness Service • Murray Bridge Adelaide Hills Homelessness Service • Outer North Homelessness Service • Outer Southern Homelessness Service • Port Lincoln Homelessness Service • Port Augusta Homelessness Service • Riverland Homelessness Assertive Outreach Program • Southern Country Homelessness Service

분류	기관명
Adults	• Street to Home Service • St Vincent de Paul Homeless Men Crisis Accommodation Service(men only) • Towards Independence • Western Adelaide Homelessness Service • Whyalla Homelessness Service • Yorke and Mid North Homelessness Service
Young people	• Adolescent Community Care Options • Aboriginal Youth Early Intervention Program • Ceduna Homelessness Service • Eastern Adelaide Youth Homelessness Service • Financial Services Clinic • Fleurieu and Kangaroo Island Homelessness Service • Homelessness Gateway • Housing Legal Clinic • Inner North and North East Youth Homelessness Service • Inner Southern Youth Homelessness Service • Ladder St Vincent Street • Outer North Youth Homelessness Service • Outer Southern Youth Homelessness Service • Port Augusta Youth Homelessness Service • Port Lincoln Homelessness Service • Schools Assertive Outreach • Southern Country Homelessness Service • St John's Youth Service • Together 4 Kids (Child focused support) • Therapeutic Youth Service • Western Adelaide Youth Homelessness Service • Whyalla Homelessness Service • Yorke and Mid North Homelessness Service • Young Family Support Program • Youth Accommodation Aboriginal Specific Homelessness Services • Youth Gateway • Youth Justice Program
Domestic or family violence	• Adelaide Domestic Violence Crisis Accommodation Service – Bramwell House • Ceduna Reg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Service

VOICEYE
voiceye.com

분류	기관명
Domestic or family violence	• Coober Pedy Reg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Service •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Gateway • Eastern Adelaide Domestic Violence Service • Fleurieu and Kangaroo Island Domestic Violence Service • Homelessness Gateway • Housing Legal Clinic • Limestone Coast Domestic Violence Service • Murray Mallee and Adelaide Hills Domestic Violence Service • Northern Adelaide Domestic Violence Service • Northern Regional Aboriginal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Service • NPY Women's Council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Service • Port Augusta Reg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Service • Port Lincoln Regional Domestic Violence Service • Southern Adelaide Domestic Violence Service • Southern Regional Aboriginal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Service (Ninko Kurtangga Patpangga) • Statewide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Domestic Violence Service • Staying Home Staying Safe • Western Adelaide Domestic Violence Service • Whyalla Regional Domestic Violence Service • Yorke and Mid North Domestic Violence Service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 Aboriginal Transitional Housing and Support Service (ATHOS) Adelaide • Aboriginal Youth Early Intervention Program • Ceduna Reg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Service • Coober Pedy Regional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Service • Domestic Violence and Aboriginal Family Violence Gateway • Eastern Adelaide Aboriginal Specific Homelessness Service • Homelessness Gateway • Lakeview Transitional Accommodation Centre- Port Augusta • Northern Regional Aboriginal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Service • NPY Women's Council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Service

분류	기관명
Aboriginal or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 Port Lincoln Homelessness Service • Southern Regional Aboriginal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Service (Ninko Kurtangga Patpangga) • Street to Home • Western Aboriginal Homelessness Service • Youth Accommodation Aboriginal Specific Homelessness Services • Wangka Wilurrara Transitional Accommodation Centre - Ceduna

5. 비교분석 및 함의

미국, 독일,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우선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장애인학대피해자만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독일의 경우 모든 여성피해자를 위한 시설에서, 미국의 뉴욕 주에서도 모든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서비스를 갖추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학대피해보다 범위가 넓은 집이 없는 상태, 즉 홈리스 정책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거주가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피해자만 분리하여 거주공간을 제공하다보니 원 가족과 이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국가의 경우 모두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셋째, 지원서비스로는 거주서비스와 더불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단 학대를 당한 경우 현재 거주 공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폭력에 의한 심리 정서적 문제, 사법적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장애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홈리스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만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자를 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였다.

둘째, 거주서비스와 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거주서비스와 지원서비스가 통합운영된 반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거주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 또는 위탁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했고, 지원서비스는 별도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경향이 강했다.

셋째, 단기적인 거주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 독일, 영국의 경우 모두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했지만 호주의 경우 1년까지 가능했다.

〈표 15〉 미국, 독일, 영국, 호주의 학대피해자 지원정책 종합

구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쉼터 종류	• 주로 홈리스를 위한 거주서비스에 통합 • 뉴욕 주에만 장애여성 쉼터 존재	• 여성거주시설 및 여성보호시설	• 홈리스를 위한 응급 거주공간 • 여성피난처	• 홈리스를 위한 응급 거주공간 제공
장애인 분리 여부	• 분리보다는 통합 쉼터 운영	• 일반지원 시스템에 통합	• 별도의 장애인 시설 없음	• 별도의 장애인 시설 없음
이용자	•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장애인(가족과의 동반 입소 가능	• 학대피해 당사자 (12세 이하의 아동 동반 거주 가능)	•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 • 학대피해 당사자 (가족 동반 거주 가능)	•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 • 학대피해 당사자
지원서비스	• 심리 정서적 상담 제공 • 작업치료 • 아동양육서비스, 양육기술지원 •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계획 • 당사자의 권리주장, 자기결정 등 권익옹호 등 • 사례관리 등	• 위기중재프로그램 • 사회적, 경제적, 법적 보장을 위한 정보와 지원 • 관청과 법원에의 동반 • 개별 상담과 지원 • 양육능력 강화 및 어머니-자녀관계 강화를 위한 상담 • 삶의 계획 지원 • 자기결정적인 삶의 지원 •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등	• 숙박 • 아침식사(일부) • 장기적 거주공간 계획 지원	• 지방정부 및 임대사업자는 주택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이 별도로 제공
이용 기간	• 최장 180일	• 6개월	• 6개월	• 12개월

구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장애인 접근보장을 위한 환경	•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필요 – 모든 접근권 보장	• 물리적인 구조의 변화, 장애인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예: 쉬운 언어로 이루어진 상담 진행), 장애인 관련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의 채용, 여성거주시설의 자료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전용시설을 만들지 않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지원	• 전용시설을 만들지 않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 지원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 다양한 분야의 예술 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전문 사례관리자 등	•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가 • 교사	–	–

이상 네 국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만을 위한 쉼터보다는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장애인도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정보제공방식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아동, 노인 등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쉼터를 일시에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노인의 경우만이라도 학대피해에 따라 쉼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쉼터보다는 아동쉼터나 노인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관련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대를 당했다고 가족과 이별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구금하는 지원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이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거주서비스와 지원서비스의 분리가 필요하다. 쉼터에서는 거주서비스와 더불어 간단한 의식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보다 난이도가 높은 지원서비스는 별도의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단기적인 거주서비스 제공기간은 세 나라의 경향을 받아들여 6개월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VOICEYE
voiceye.com

Ⅳ

초점집단면접 결과

VOICEYE
voiceye.com

Ⅵ 초점집단면접 결과

1. 학대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자 집단면접 분석결과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피해자의 신속한 심신 회복 및 이후의 통합적 삶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려면 쉼터의 주요 기능, 세부방안, 법적 기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쉼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쉼터의 여건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핵심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통해 장애인 쉼터의 운영 등에 요구되는 요소들과 향후 방향성 등을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특성

아동과 노인학대 쉼터는 전국적으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오랜 기간의 축적된 지원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노인과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쉼터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이해가 높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인들을 지원한 경험이 풍부한 권익옹호기관의 실무자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쉼터와 연계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인권기관의 실무자도 연구참여자로 참여하였다.

〈표 16〉 학대피해자 지원기관 실무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소속	직책
1	여성	30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2	여성	40대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3	남성	30대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4	남성	30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 분석결과

(1) 피해 장애인 쉼터의 주요 기능

○ 노인 쉼터의 경우 학대당한 어르신의 안전과 보호를 가장 중시함. 즉 쉼터는 어르신 심신의 안정과 쉼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김. 어르신은 원 가족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강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피해자 지원 외에 원가족의 기능회복과 순기능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됨. 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이며, 의료서비스와 심리서비스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함

○ 아동 쉼터의 경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중시함. 따라서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극적인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아동이 학생인 경우 쉼터입소로 인해 교육이 단절되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전학 문제를 검토하고 지원함. 쉼터의 세부적인 운영과 제공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므로 편차가 있음

○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기본적인 보호 기능 외에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음. 우선 학대피해장애인의 심신안정을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지원이 마무리 되면 가사, 금융 등 일상생활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함

○ 장애인 쉼터가 자립 지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태도와 인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는 피해장애인의 자립 필요성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이해수준에 따라 지원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역할 또는 관계 정립

○ 쉼터 초기 정착과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전문 옹호기관이 쉼터를 운영하거나 밀착되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됨

○ 쉼터도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장애인옹호기관이 쉼터를 운영한다면 쉼터에서의 이용자 간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학대를 조사하는 것이 제한이 많을 것임. 그 결과 학대나 유사 사건의 은폐가능성이 있

VOICEYE
voiceye.com

을 뿐만 아니라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사례관리는 전문 옹호기관이 담당하고 응급상황의 긴급 지원은 쉼터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기됨

○ 쉼터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려면 옹호기관이나 법인의 형태나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극 지지됨. 또한 지자체가 위탁할 때 이러한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3) 피해장애인 쉼터 세부유형

○ 노인 쉼터는 보호에 집중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결과 쉼터의 세부 유형을 4가지로 형태로 고민하고 있음

○ 쉼터의 유형 구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쉼터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즉 쉼터의 역할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임. 또한 종사자의 자격이나 역할도 쉼터의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제기됨

○ 학대 장애인 쉼터의 경우 이와 같은 제반 특성을 감안할 때 몇 가지로의 유형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됨.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여성, 남성, 가족 대상의 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입소를 가능하게하고, 성인은 자신이 선택하게 하고, 가족이 모두 학대 피해자인 경우 성별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동일한 공간에서 지원을 보장받게 할 것이 강조됨

○ 장애아동이나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분리시켜 장애인 쉼터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됨

(4) 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 쉼터의 경우 생활시설의 한 형태로 포함됨. 그러나 쉼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종사자의 경력을 보장하거나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쉼터의 존재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음을 토로함

○ 노인 쉼터의 경우 기존의 5가지 노인복지시설유형에서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쉼터를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구분함.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총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장애인 쉼터의 경우 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연구참여자가 모두 동의함. 특히 장애인 쉼터의 기능이 자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시되므로 기존의 거주시설 체계로 통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기됨.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별도의 새로운 장애인시설유형으로 하되,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이 강조됨

(5)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방법

○ 쉼터의 설치는 신고제, 지정, 인가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가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신고제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함. 신고제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어 어떤 방식이든 무난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됨. 신고제의 경우 쉼터 운영에 대한 제약이 적어서 누구든지 쉼터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상황이나 여건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연구참여자들은 쉼터의 설치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보다는 신고제를 제외하되, 쉼터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보다 중시하였음

(6)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기준(물리적 요건, 인력 등)

○ 아동 쉼터의 이용자 정원은 7명, 전용 면적은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중 한 곳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인 방 3개는 아동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쉼터의 인력은 원장, 보육사 2명,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됨

○ 노인 쉼터의 이용자 정원은 총 5명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4명의 요양보호사로 구성됨. 현재 노인 쉼터의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장기 요양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장애인 쉼터의 경우 설치기준은 쉼터의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언급됨.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피해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함

○ 타당한 방식으로 제안된 설치 기준은 8인 이상인 경우 사적 공간을 보장하거나 쉼터의 기본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인원수는 그보다 적어야 한다고

조사됨.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은 원장, 실무자, 야간 근무자, 주말 근무자 등 서비스 질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중요하게 논의되었음

(7)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기간

○ 아동 쉼터는 7명의 정원 중 4명은 통상적으로 6개월 ~ 1년 미만 동안 쉼터를 이용하고, 3명은 응급조치가 끝나면 쉼터를 퇴소하는 실정임. 장기 입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생활시설로 연계하며, 세부적인 이용기간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

○ 노인 쉼터의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며 1달 연장이 가능하여 총 4개월 이용할 수 있음. 만약 이용기간이 종료되어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양로시설로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쉼터의 이용기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쉼터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보다는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김. 따라서 이용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사법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감안할 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이용기간으로 적절하며, 그 이후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을 제기함

2. 이용자 집단면접 분석결과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기능, 제공 서비스, 운영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핵심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학대피해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므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통합적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쉼터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1) 연구참여자 특성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도 핵심집단면담에 참여시켰다. 핵심집단면접의 참여자는 총 6명이며, 대부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미등록인 경계성 장애인도 있었다. 피해자의 학대 유형은 공통적으로 급여 미지급과 노동력 착취인 경제적 학대가 많으

며 신체적 학대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이해수준도 좋은 편이라 큰 어려움 없이 면담이 진행되었다. 모두 적극적으로 답변하였고 본인이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7〉 쉼터 이용 연구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피해 학대유형	장애유형	쉼터 이용기간
1	남성	40대	경제적 학대	지적장애	6개월
2	남성	40대	경제적 학대	지적장애	5개월
3	남성	50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지적장애	2개월
4	남성	50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지적장애	2개월
5	남성	20대	경제적 학대	지적장애	5개월
6	남성	30대	경제적 학대	미등록 장애	퇴소

2) 분석결과

(1) 이용 중인 서비스와 만족도

○ 함께 운동하고, 산책하고, 식사 준비하는 등 쉼터에서 자신이 소소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표현함

○ 쉼터 이용자들과 함께 하는 그림, 물감, 종이접기 등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할 수 있다는 점도 만족도가 높았음

○ 쉼터에서는 특히 이전의 학대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씻기, 식사준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심리적 지지도 제공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감사와 만족감을 표현하였음

○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야외활동에 관한 회의 등에 모두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며 재미있다고 응답함. 나중에 혼자 살 때를 대비하여 현재의 경험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음

VOICEYE
voiceye.com

○ 근거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꺼리를 직접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취미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보임

○ 이용자와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 의견공유가 필요한 것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와 방식 및 이러한 회의가 자주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2) 향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사자 욕구

○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비교적 강한 편임

- 바닷가 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외출, 가고 싶은 곳을 말해서 함께 나간다 등

○ 나중에 자신이 독립해서 홀로서기를 할 때에 잘 해낼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을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많이, 제대로 배워두고 싶어 하고 중요하다고 여김

- 돈 관리, 전자제품 다루기, 가구 구입, 요리, 가사일, 생활용품 구매 등

○ 혼자서 살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잘 알아야 하므로 이를 배워야 한다고 여김

- 가스와 문 잠그기 등 안전을 위한 관리, 위생 관리 등

○ 법률 자문, 취업 등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것과 필요한 정보는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음

- 본인이 제대로 법을 몰라서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지식을 알고 싶은 욕구가 큼

○ 학대 피해자들의 경우 영양 불균형, 노동력 착취, 무관심 및 관리소홀 등으로 치아 문제가 많은 편임. 특히 치과 치료가 필요하고 당사자의 욕구도 높은 편임

○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배워보고 싶으나 비밀유지나 외부 노출 주의 등의 쉼터의 특성 상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한계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쉼터 실무자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크며, 자신에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응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자들은 존중받고 싶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기 등 전반적으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3) 새로운 이용자의 중도 입소에 따른 불편 정도

○ 쉼터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용자가 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함. 즉 거부감 없이 새로운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함께 살아야 할 가족처럼 여기므로 입소자의 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이해됨

○ 전반적으로 중도 입소자에 대해 이용자가 있는 것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공간은 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음.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동일한 학대 경험에 대한 연대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 배려,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실무자들도 쉼터 이용자들은 중도 입소자를 거부감 없이 대하며, 상호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고 설명함

(4) 쉼터 이용의 적정 기간

○ 모든 이용자는 쉼터의 이용기간이 6개월인 것을 알고 있음. 6개월이라는 제한에 대해 큰 불만이나 불편은 없었음.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관심이 많고 더욱 중요함
○ 쉼터를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므로 이의가 없음. 그보다는 돈을 벌어서 나가고 싶어함. 즉 자신이 쉼터를 나가더라도 생활에 큰 문제가 없도록 돈을 벌어서 나갈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음
○ 현재 이용하는 쉼터도 좋지만 내 집, 내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음.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서 적정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응답함

(5) 퇴소 이후의 거주 장소

○ '가정집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 개나 고양이도 키우면서... 동물은 나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다'고 토로함
○ 가족 특히 아버지와 살고 싶어함. 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집과 같은 곳, 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매우 강하게 표현함
○ 원룸에 대한 관심이 많음.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적 공간을 선호하였음

(6) 쉼터 위치

○ 학대가 발생한 곳이나 주변에 쉼터가 있어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쉼터가 서울에 위치한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함
○ 처음에는 서울이 복잡하고 넓어서 길을 찾는 것도 걱정되고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으나 현재는 고향보다 서울이 더 좋다고 표현함

VOICEYE
voiceye.com

○ 고향인 예천으로 가고 싶음. 이러한 욕구는 쉼터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그 곳에 가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지인들도 있고, 방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임

3. 분석에 따른 함의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쉼터의 이용자 그리고 노인, 아동 등 학대피해자 쉼터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장애인인권 분야의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핵심집단면담의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자립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되 주 기능은 1차적으로 신속한 심신 안정과 보호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지원이 종료되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자립을 준비하고 실현해나가도록 다양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쉼터가 장기적으로 지원업무나 총괄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사례관리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하여 제공하도록 쉼터와 전문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쉼터의 역할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사회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지원의 연속성과 업무 전문화 및 효율성을 위한 역할 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쉼터의 세부 유형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 등 성별에 따른 유형 구분과 학대당한 가족을 위한 가족유형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와 입소하여 지원을 받되, 아동과 노인이 학대피해자인 경우 기존의 아동과 노인 전문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과 노인을 모두 장애인쉼터로 이관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일종의 침해이자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세부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되 장애유형이나 당사자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셋째, 쉼터의 법적 근거는 지역사회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가야 할 것이다. 노인 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시

설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위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명시화가 요구된다.

넷째, 쉼터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용자 수 제한과 이용기간 등 요건들이 명확하고 피해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인 쉼터 이용자들도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쉼터 생활에 큰 불만이 없고, 선생님들도 좋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도 나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공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성을 존중한 공간의 확보와 인원수 제한을 강조한 실무자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6인 이내가 적절하며 이용기간도 긴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자립을 지향하는 방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5~6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섯째, 쉼터의 기능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실무자의 민감성, 이해도, 가치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쉼터의 학대피해자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서적지지 및 쉼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쉼터에서 주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퇴소를 앞둔 경우 학대 피해자들은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실무자의 세심함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동의하고 지원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쉼터의 인력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떠한가를 우선 볼 필요가 있다.

VOICEYE
KOR
voiceye.com

V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VOICEYE
voiceye.com

V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경우 원 가정 또는 원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한 경우 원 가정 또는 원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피해장애인 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던가, 시행규칙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을 민간기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설치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초점집단면접 등에서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류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학대피해 남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 가족쉼터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가족쉼터는 학대피해자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학대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 어머니, 아버지와 입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장애아동과 장애노인이 피해자인 경우 기존의 아동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담당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피해장애인 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일상생활 훈련, 주거계획, 기술향상, 생활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3. 피해장애인에게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정서적 지원 제공
4.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
5.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6.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7.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 선정 지원
8.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원에 대해서는 쉼터의 기능이 아니라, 지원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

-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 법률구조기관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 사례관리
-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5. 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설치기준

여성장애인 쉼터, 남성장애인 쉼터, 가족 쉼터 모두 다음과 같은 세부 설치기준을 따른다. 또한 이 외의 운영규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1) 규모

가.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으로 방 4개 이상인 주택형 숙사

나. 장애인용 방 3개, 직원용 방 1개 이상으로 하며,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 제공이라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므로 쉼터 내 사무실을 설치 할 수 없음

다. 한 방에 2명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없음

라.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2)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는 가족쉼터는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상 단기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규정(시행규칙 별표 5)을 준용하도록 한다.

3) 종사자 기준

가. 쉼터의 장(소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쉼터업무 총괄 관리

나. 팀장 1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쉼터 입·퇴소 관련 행정, 회계, 실적보고,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입소자에 대한 상담 등

다. 생활지원인 4인: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자
-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등

6. 쉼터설치 필요 정도

우선은 각 시도별로 쉼터가 1개소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소 17개소 운영이 필요하다.

7. 이용절차

1) 입소

○ 입소 대상자: 학대피해장애인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때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지원서비스

○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을 통한 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VOICEYE
voiceye.com

○ 피해장애인에게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정서적 지원 제공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
○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 선정 지원
○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3)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이후 원 가정 복귀, 지역사회 자립, 또는 거주시설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퇴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8. 예산지원

1) 지원기준

○ 지원금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되, 운영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 지원금은 현재 거주인원과는 상관없이 정원에 따라 지원함. 또한 예산집행 등 평가 시에도 이용률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음

2) 지원항목

① 인건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② 운영비

○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현판설치
- 숙직비(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③ 사업비

○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침 부대비용, 프로그램비, 교통비 등

○ 장애인 방문상담, 학교 방문 등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1인당 일비 및 실비 포함 월 350,000원)를 별도 지원하며 이를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 및 시설 홍보비로 집행 가능. 운임은 실비 정산.

④ 비수급자 생계비 등: 생계비, 교육비, 퇴소자립지원금 등

○ 생계비: 비수급자로 확인이 된 경우 입소 일부터 소급 지급가능

○ 교육비: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하되, 소급지급 가능(교복,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 등에 사용)

○ 퇴소자립지원금: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급

⑤ 보장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9. 종사자 의무교육 시행

쉼터 종사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0. 시행규칙 및 사업지침의 개정안

쉼터의 법적 근거는 지역사회에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자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명시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지난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별도의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지침 개정이 요구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쉼터의 설치를 위탁가능하게 하는 규정, 쉼터의 종류에 대한 규정, 쉼터의 업무에 대한 규정, 쉼터의 세부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8(피해장애인 쉼터의 종류)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5의4와 같이 구분한다.

제43조의9(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일상생활 훈련, 주거계획, 기술향상, 생활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3. 피해장애인에게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정서적 지원 제공
4.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
5.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6.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7.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 선정 지원
8.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43조의10(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②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운영기준은 제1항 세부 설치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별표 5의4], [별표 5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사항

[별표 5의4]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류 (제59조의11제1항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피해장애인 쉼터	가. 학대피해 남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를 당한 남성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나. 학대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다. 학대피해 가족쉼터: 학대피해자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학대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 어머니, 아버지와 입소하여 지원하는 시설

VOICEYE
voiceye.com

〈표 2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피해장애인 쉼터의 세부 설치기준 (제59조의11제1항 관련)

1. 규모

가.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으로 방 4개 이상인 주택형 숙사

나. 장애인용 방 3개, 직원용 방 1개 이상으로 하며,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 제공이라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목적에 위반되므로 쉼터 내 사무실을 설치 할 수 없음

다. 한 방에 2명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없음

라. 입지조건: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

2.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상 단기거주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규정(시행규칙 별표 5)을 준용하도록 한다.

3. 종사자 기준

가. 쉼터의 장(소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쉼터업무 총괄 관리

나. 팀장 1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회재활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쉼터 입·퇴소 관련 행정, 회계, 실적보고,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입소자에 대한 상담 등

다. 생활지원인 4인: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자

-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등

또한 사업지침에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위의 7. 이용절차, 8.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표 2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개정사항

1. 이용절차

1) 입소

○ 입소 대상자: 학대피해장애인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때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지원서비스

○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을 통한 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 피해장애인에게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정서적 지원 제공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
○ 피해장애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 선정 지원
○ 그 밖의 쉼터 거주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

3)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이후 원 가정 복귀, 지역사회 자립, 또는 거주시설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VOICEYE
voiceye.com

○ 이용자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 시 계속적인 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 보호시설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또는 노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퇴소

○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

2. 예산지원

1) 지원기준

○ 지원금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되, 운영비는 사업비를 제외한 지원액의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
○ 지원금은 현재 거주인원과는 상관없이 정원에 따라 지원함. 또한 예산집행 등 평가 시에도 이용률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음

2) 지원항목

① 인건비

○ 각 지자체 및 시설 운영주체의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 책정을 할 수 있음

② 운영비

○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
-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당 보험료 연 5만원 이내)
- 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현판설치
- 숙직비(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등. 종사자의 숙직, 연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

③ 사업비

○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지침 부대비용, 프로그램비, 교통비 등

○ 장애인 방문상담, 학교 방문 등 보호시설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1인당 일비 및 실비 포함 월 350,000원)를 별도 지원하며 이를 상담원의 업무에 소요되는 출장비 및 시설 홍보비로 집행 가능. 운임은 실비 정산.

④ 비수급자 생계비 등: 생계비, 교육비, 퇴소자립지원금 등

○ 생계비: 비수급자로 확인이 된 경우 입소 일부터 소급 지급가능

○ 교육비: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하되, 소급지급 가능(교복,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 등에 사용)

○ 퇴소자립지원금: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퇴소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급

⑤ 보장시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3. 종사자 의무교육 시행

쉼터 종사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실무자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0. 장애인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김용득 외, 2016.『학대피해장애인지원체계 기반연구 II - 국내외 학대피해자 지원체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2016a.『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b. “정진엽 장관, 아동학대 대응 및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현장의견 청취”.『보건복지부 2016.1.25.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6c.『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보건복지부.

윤소하(2016). 국회의원 윤소하 보도자료, “장애아동, 비장애아동보다 학대 발생 건 수 5배 이상”. 국회의원 윤소하.

이동석. 2013. 영국의 지적장애인 주거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장애인복지 연구 4(1): 1-26.

이동석·김용진·전지영·조문순·박수인·이미현·백지현. 2016. 비밀은 없다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 인권상담 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DA Best Practices Tool Kit for State and Local Goverments Chapter 7 Addendum 2: The ADA and Emergency Shelters : Access for All in Emergencies and Disasters

Arbeitsgruppe des Strafrechtsausschusses der Justizministerkonferenz. 2014. Mindeststandards der psychosozialen Prozessbegleitung

BMFSFJ/SoFFI, 2011, Bestandsaufnahme Frauenhä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 Unterstützungsangebote fü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Situation der Frauenhauser- Fachberatungsstellen und anderer Unterstutzungsangebote fur gewaltbetroffene Frauen und deren Kinder

Claudia Hornberg & Monika Schröottle. 2012. Lebenssituation und Belastungen von Frauen mit Beeinträachtigungen und Behinderungen in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Claudia Hornberg and Dr. Ralf Puchert. 2012. Lebenssituation und Belastungen von Mäannern mit Behinderungen und Beeinträachtigungen in Deutschland – Haushaltsbefragung, Universitäat Bielefeld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2003. Abuse and Neglect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 Public Health Priority for the State of California

Disability Rights California_ Reporting Elder and Dependant Adult Abuse : It's Your Duty!

Laurie E. Powers, Mary Oschwald, 2004.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S, BARRIERS AND PREVENTION STRATEGIES. Center on Self-Determination Oregon Institute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 2004. March.

Los Angles Times. June 14, 2004.

Shelter. 2013. Homeless? Read this. - The rules on how and when the council has to help you. Shelter.

Valuing People Now Leaflets. In: www.housingoptions.org.uk. 2013.2.13.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homelessness/emergency_accommodation_if_homeless/womens_refuges

http://gewaltschutz-ambulanz.charite.de/betroffene/

http://www.frauen-beauftragte-bayern.de/projekt-uebersicht

http://www.frauenhelfenfrauen-hamburg.de/Was-muss-ich-mitbringen.476.0.html

http://www.maennerhaeuser.de/index.php/idee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

https://www.duesseldorf.de/gesundheitsamt/hilfen_und_beratung/beratung_schwangerschaft_lebenskrisen_gewaltopfer/gewaltopferberatung.shtml

VOICEYE
voiceye.com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

발 행 일 : 2017년 8월
발 행 처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　　화 : 02)2675-8152 전송: 02)2675-8675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이 메 일 : cowalk1004@daum.net